

2022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서울시 스포츠 폭력행위의 원인분석과
근절방안 모색



도시와 안전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시와 안전 귀하

김춘례, 오중석, 안광석, 최영주

이 보고서를

「서울시 스포츠 폭력행위의 원인분석과 근절방안 모색」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6.

- 연구기관 :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이상열 (중원대학교, 교수)
- 연구원 : 남재성 (원주한라대학교, 교수)
김철수 (중원대학교, 교수)
- 자문위원 : 박창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김상수 (장안대학교 경찰법률학과 외래교수)

(요약문)

서울시 스포츠 폭력행위의 원인분석과 근절방안 모색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요 약

-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 문제점에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최적의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해야 하지만, 폐쇄적인 훈련 환경과 엄격한 상명하복 등의 관습에 의한 다양한 폭력피해에 노출되고 실정이며, 피해 이후에도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학습권 침해, 선배와 지도자의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대부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
- 따라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활동과 관련한 일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최근 3차례의 개정을 통해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구축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발생한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제1조 법률의 목적을 개정하여 소위 ‘즐거이는 스포츠’가 우선되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 및 자격제한을 강화한 바 있음
- 이어 철인3종 경기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2021년 2월 19일에 「국민체육진흥법」 추가 개정이 이루어져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기능의 강화,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바 있음
- 이후 추가적 제도개선을 위해 2021년 6월 9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대상자의 비위행위와 유죄확정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학교, 체육단체 등의 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년 마다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의 장에게 선수 인권보호 조치를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였고, 합숙소 내 사생활의 자유와 입소여부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2020년 9월 2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총 129건(인권침해 44, 비리 85)의 신고를 접수한 결과를 살펴보면,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폭력이 24건(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성폭력 5건(11%), 기타 15건(34%)으로 나타나는 등 스포츠 폭력은 스포츠계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성에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체육회에 접수된 80건의 폭력·성폭력 사건 징계 수위를 분석한 결과, 가장 강한 징계인 '영구제명'을 내린 경우는 6건밖에 되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스포츠 폭력의 발생 원인과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함과 동시에 정부는 물론 서울시의 근절 노력과 그 한계에 따른 한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 모색하고자 하였음
- 특히,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는 물론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인식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였음
-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추출은 단순 무작위 표집방법(simple random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였음
- 그리고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질문항목을 수정·보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스포츠 분야 종사자 및 운동선수 총 200명을 대상으로 'NAVER 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충실히 응답하여 제출한 설문지 11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양적연구인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61.8%로 나타나는 반면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도 7.0%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관련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해, 많은 선수들에게 폭력 예방과 성교육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교육을 진행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나 '휴식 시간에 진행하여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선수문화와 동떨어진 교육내용으로 인해 공감하기 어려웠다', '교육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교육 콘

테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교육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81.8%가 폭력,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기관이나 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은 71.8%에 그치고 있음
-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다수가 응답을 기피하고 있었지만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들이 나타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음
- 즉, 이와 같은 점은 스포츠 폭력의 피해가 없는 상태, 그리고 피해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합리적 대책방안이 마련된 상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폭력에 대한 피해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팀 내 활동 등 선수생활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또한 ‘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인들 중에는 ‘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이 폭력예방에 도움’, ‘지도자와 관계’, 연령, 운동종목(축구)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곧 (성)폭력 예방교육이 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지도자와의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팀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더불어 팀 내의 인간관계, 즉 지도자와 선수 및 선수들 사이의 화목한 인간관계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절실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스포츠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궁극적으로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아래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체를 둘러싼 다양한 법, 제도적 장치들이 공고히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근본적으로 지도자 및 관리자의 폭력 예방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스포츠 폭력이 더욱 더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공론화되어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이를 통해 체육계는 물론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체육계 구성원 모두가 폭력 없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정부는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입법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확대, 「스포츠기본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통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가칭 「서울특별시 스포츠 인권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스포츠 정책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과 징계권한의 강화, 그리고 인력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 및 위상 확대가 필요함
- 또한 관련 지도자와 선수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합숙훈련의 최소화와 폭력 예방장치 설치 확대,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억제 대책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체육계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체육계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스포츠계의 위계적 권력구조와 폐쇄성 극복, 엄격한 처벌을 통한 근본적 관행 개선,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목 차

I .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가. 연구의 목적	1
나.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가. 연구의 범위	6
나. 연구의 방법	7
II . 이론적 배경	8
1. 스포츠 폭력 및 스포츠 성폭력의 개념	8
가. 스포츠 폭력의 개념	8
나. 스포츠 성폭력의 개념	10
2. 스포츠 폭력의 원인과 특성	10
가. 스포츠 폭력의 일반적 발생원인	10
나. 스포츠 폭력의 역사적·구조적 맥락에 따른 원인 분석	12
다. 스포츠 폭력의 특성	17
3. 스포츠 폭력의 특수성과 피해결과	18
가. 스포츠 폭력의 환경적 특수성	18
나. 스포츠 (성)폭력의 피해결과	19
4.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발생실태	20
가. 스포츠 폭력의 유형	20
나. 스포츠 폭력의 발생실태	21
5. 스포츠 기본권과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	24
가. 스포츠 기본권	24

나. 스포츠 인권	25
다. 스포츠 기본권과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26
Ⅲ. 스포츠 폭력 예방에 관한 인식태도 분석	32
1. 연구의 모형	32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3
가. 자료수집	33
나. 분석방법	34
다. 조사 및 분석 내용	34
라. 설문지 구성	34
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특성	35
3. 분석결과	40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40
나. 분야별 분석결과	42
4. 분석결과의 요약 및 논의	65
가. 폭력·성폭력 해결방안	65
나. 팀 내 인간관계	70
다. 팀 생활 만족도	71
라. 분석결과의 논의	72
Ⅳ. 서울시의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75
1.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및 보완	75
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확대	75
나. 「스포츠기본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78
다.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통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79
라. 가칭 「서울시 스포츠 인권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한 「스포츠 인권헌장」 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의 한계 보완	81

2.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83
가.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83
나.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 및 위상 확대	83
다. 지도자 및 폭력 선수에 대한 제재 강화	88
라. 합숙훈련의 최소화와 폭력 예방장치 설치 확대	90
마.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억제 대책 강화	91
3. 체육계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 확대	92
가. 체육계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92
나. 스포츠계의 위계적 권력구조와 폐쇄성 극복	92
다. 엄격한 처벌을 통한 근본적 관행 개선	93
라.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94
V. 결 론	97
〈참고문헌〉	100
〈부록: 설문지〉	105

표 목 차

〈표 2-1〉 스포츠계 폭력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9
〈표 2-2〉 스포츠 폭력유형 구분 및 주요 사례	21
〈표 2-3〉 초·중·고 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 주요결과	22
〈표 2-4〉 스포츠 인권 현장	26
〈표 2-5〉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별 주요 권고 사항	29
〈표 2-6〉 서울시 스포츠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스포츠 거버넌스의 주요 내용	29
〈표 3-1〉 (성)폭력 해결방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30
〈표 3-2〉 (성)폭력 해결방안의 항목 간 상관관계	37
〈표 3-3〉 지도자와 관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38
〈표 3-4〉 지도자와 관계 변인의 항목 간 상관관계	38
〈표 3-5〉 지도자와 관계 변인의 신뢰도 통계량	38
〈표 3-6〉 팀원의 화합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39
〈표 3-7〉 팀원의 화합 변인의 항목 간 상관관계	39
〈표 3-8〉 팀원의 화합 변인의 신뢰도 통계량	39
〈표 3-9〉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40
〈표 3-10〉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분포	41
〈표 3-11〉 조사대상자들의 운동 종목	41
〈표 3-12〉 조사대상자들의 운동 경력	41
〈표 3-13〉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빈도분석	42
〈표 3-14〉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수강횟수	43
〈표 3-15〉 성별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경험	43
〈표 3-16〉 합숙 장소별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경험	44
〈표 3-17〉 연령별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경험	44
〈표 3-18〉 운동 종목별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경험	45
〈표 3-19〉 운동 연수별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경험	45
〈표 3-20〉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여부	46
〈표 3-21〉 성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여부 ..	46
〈표 3-22〉 합숙 장소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 경로	47
〈표 3-23〉 연령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경로	47
〈표 3-24〉 운동 종목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여부	48
〈표 3-25〉 운동 연수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여부	48
〈표 3-26〉 성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48
〈표 3-27〉 합숙 장소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49
〈표 3-28〉 연령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49
〈표 3-29〉 운동 종목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49
〈표 3-30〉 운동 연수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50
〈표 3-31〉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51
〈표 3-32〉 성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51
〈표 3-33〉 합숙장소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51
〈표 3-34〉 연령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51
〈표 3-35〉 운동 종목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52
〈표 3-36〉 운동 연수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52
〈표 3-37〉 성별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53
〈표 3-38〉 연령별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53
〈표 3-39〉 운동 종목별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54
〈표 3-40〉 합숙 장소별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55
〈표 3-41〉 운동 연수별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55
〈표 3-42〉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의 신체폭력 예방 도움 정도	56
〈표 3-43〉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의 도움 사례 ...	56
〈표 3-44〉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의 문제점	57
〈표 3-45〉 성별 교육과 폭력 예방 도움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	57
〈표 3-46〉 연령별 교육과 폭력 예방 도움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57
〈표 3-47〉 운동 종목별 교육과 폭력 예방 도움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58
〈표 3-48〉 합숙 장소별 교육과 폭력 예방 도움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58
〈표 3-49〉 운동 연수별 교육과 폭력 예방 도움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58
〈표 3-50〉 성별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의 평균차 검증	59
〈표 3-51〉 연령별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의 평균차 검증	59
〈표 3-52〉 운동 종목별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의 평균차 검증	59
〈표 3-53〉 합숙 장소별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의 평균차 검증	59
〈표 3-54〉 운동 연수별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0
〈표 3-55〉 성별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0
〈표 3-56〉 연령별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0
〈표 3-57〉 운동 종목별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1
〈표 3-58〉 합숙 장소별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1
〈표 3-59〉 운동 연수별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1
〈표 3-60〉 성별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2
〈표 3-61〉 연령별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2
〈표 3-62〉 운동 종목별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2
〈표 3-63〉 합숙 장소별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2
〈표 3-64〉 운동 연수별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62
〈표 3-65〉 생활 만족도 변인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63
〈표 3-66〉 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64
〈표 3-67〉 팀 생활 만족도 관련 회귀분석의 분산분석	64
〈표 3-68〉 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64
〈표 4-1〉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최근 개정의 주요 내용	76
〈표 4-2〉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 개정 방향	78
〈표 4-3〉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요 논의과정	84
〈표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가해 학생 대회 참가 제한 규정 내용	90

그 립 목 차

〈그림 3-1〉 연구의 모형	33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신체적·정신적 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선수들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자국을 대표하여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그런데, 항상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던 스포츠 활동의 이면에 ‘폭력’, ‘성폭력’, ‘미투’, ‘차별’, ‘침해’ 등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사회문화적 사안들이 잠재해 있었으며, 이는 최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음
- 실제로 폭력 피해에 대한 잇따른 폭로와 증언, 그리고 미투운동과 같은 스포츠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체육계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사실에 관한 증언 및 폭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최근 체육계에서 지도자가 미성년자인 선수를 성폭행한 사건, 코치가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음(김잔디·김대희, 2019: 4)
- 이와 같은 성폭력, 성추행, 선후배 및 지도자와 선수 간의 폭력 및 폭언 등의 스포츠 인권 관련 문제들은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정 선수의 스포츠 활동의 경력을 중단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함(이현우 외, 2021: 76).
-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인 3종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 8월 5일부터 스포츠분야의 비리조사와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전담 독립기구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 하였음
- 그리고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 구제, 이를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바 있음(연합뉴스, 2019년 1월 22일자)
- 물론 스포츠윤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뿐만 아니라 체육계 자체적으로도 스스로의 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오래전부터 지속해 왔음

- 그러나 코치 및 감독에 대한 선수의 복종의무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상호 간의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폭력,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악습과 악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종 악습과 악행으로 발생하는 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의 문제는 마치 사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처럼 치부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폭력 행위들에 대하여 스포츠 조직 내부의 자정작용에 문제해결의 기대를 걸고 방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때문에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최적의 환경속에서 훈련을 해야 하지만, 폐쇄적인 훈련 환경과 엄격한 상명하복 등의 관습에 의한 다양한 폭력피해에 노출되고 실정이며, 피해 이후에도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학습권 침해, 선배와 지도자의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대부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김보정·김지혁, 2019: 35-44)
-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는 주로 체육계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피해는 선수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며(문재태·김상겸, 2020: 77-92), 이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한 윤리의식 고취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최근까지도 다수의 공식, 비공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폭력이 발생된 상황을 즉각적으로 회피하거나 올바르게 대처하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10월 19일 보도자료)
-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스포츠계에 폭력이 만연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 관련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의 엘리트 스포츠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국내 엘리트 스포츠 환경은 지도자와 선수 간 신체접촉이 많고 합숙훈련이나 전지훈련 등으로 집을 떠나는 시간이 많으며, 상하 권력구조가 명백히 존재하는 위계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임(Joo, 2007: 267-300)
- 실제로 이와 같은 엘리트 스포츠 환경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선후배 및 지도자와 선수 간의 폭력 및 폭언 등의 스포츠 인권 관련 문제들은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정 선수의 스포츠 활동의 경력을 중단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함(이현우 외, 2021: 76)
- 또한 낡고 오래된 폐쇄적 구조로 인해 선수들은 다양한 인권침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온 언어적,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이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학원 엘리트 스포츠 선수와 국가대표, 실업 팀과 프로팀 직장 운동선수들까지 연령과 종목을 가리지 않고 스포츠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
- 그리고 메달과 성적을 강요하는 엘리트스포츠 구조는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묵인해왔고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 연맹, 각급 기관 등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왔으며(Won & Koo, 2014), 소년체전, 전국체전은 물론이고 도민체전 등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의 과도한 경쟁시스템은 메달과 성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합리화했음
- 또한 이러한 폭력적 관행과 문화는 각급 단체와 감독, 코치, 선수 간 대물림을 통해 견고하게 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허정훈·고경훈·김은지, 2020: 729).
- 따라서 스포츠 폭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구축된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임(Jung, Cho, Nam, 2012).
- 한편, 선수인권 문제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인 훈련환경속에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한 채 결국 자신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김보정·김지혁, 2019: 36)
- 보편적인 사회기준이 정립되기 전에 ‘체육인’으로 길러진 학생선수가 스스로 (성)폭력의 개념을 인지하고, 예방하고, 나아가 그 폭력에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생에게는 훈련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은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학과 수업 대신에, 합숙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학생에게는 신체 혹사와 체벌도 폭력이 아닌 훈련으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사회적 가치판단이 부족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계 학교폭력은 반드시 책임자 및 주변 성인의 노력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문제, 즉,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러한 학교체육의 폭력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체육, 특히 전문체육 환경에서의 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함
-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아래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체를 둘러싼 다양한 법, 제도적 장치들이 더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임(남기연·유소미, 2020: 166-167).
- 또한 근본적으로 지도자 및 관리자의 폭력 예방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스포츠 폭

력이 더욱더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공론화되어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범정부적인 법률 및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유재구, 2021: 51).

나. 연구의 필요성

○ 이 연구의 주요한 연구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우리 사회에서 체육계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우리는 행 여자프로농구팀 감독의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과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보도 이후임
- 그리고 2019년 1월 빙상 지도자의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유도, 태권도 등 스포츠 ‘미투’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2020년 6월에는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이 알려지면서 체육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최근에는 배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선수의 과거 (성)폭력 의혹 제기와 학교폭력 가해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기준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에 신고된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이 총 26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보다 낮은 수위인 ‘상담’ 건수 역시 2016년 197건에서 51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지난 2020년 초·중·고 학생선수 5만7,557명의 인권 상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4.7%가 신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2020년 9월 2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총 129건(인권침해 44, 비리 85)의 신고를 접수한 결과를 살펴보면,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폭력이 24건(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성폭력 5건(11%), 기타 15건(34%)으로 나타나는 등 스포츠 폭력은 스포츠계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성에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체육회에 접수된 80건의 폭력·성폭력 사건 징계 수위를 분석한 결과, 가장 강한 징계인 ‘영구제명’을 내린 경우는 6건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7.5% 수준에 불과하며,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특히 민원이 취하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안 한 경우가 3건, 처분 대상

이 아니거나 ‘무혐의’ 등으로 ‘징계 없음’ 조치가 내려진 것이 10건이었음

- 이밖에 출전·자격정지 1개월~3년을 받은 경우가 30건이었고, 자격정지 5년·자격정지 10년이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함

2) 스포츠 폭력의 발생 원인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전술한 바와 같이 스포츠 폭력은 체육계의 인권의식 부족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체육단체의 온정주의, 엘리트중심주의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그리고 출장정지 등 일회성,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과 더불어 가해 선수가 뛰어난 기량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대충 사건을 넘겨 버리는 성적 지상주의 관행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스포츠 폭력의 피해는 평생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피해자에게 작용하며, 피해자 대부분 운동을 중도포기하였거나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스포츠 폭력 발생의 근본적 원인과 그것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서울시의 근절 노력과 그 한계에 따른 새로운 대안 모색 필요

- 지난 2020년 서울시에서도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소속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원 대상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와 선수 및 지도자 간담회,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종합·반영해 보다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바 있음
- 또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 바 있음
- 그러나 대책발표 이후 여전히 법,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비한 상황이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서울시 소속 직장 운동 경기부 외에 서울시 소속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자체적인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스포츠 폭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소속 체육계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함

- 직장 운동 경기부, 대학 선수, 초·중·고 학생선수 등 스포츠 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인식태도 분석
- 관련 대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관련 법, 제도적 현황 분석
- 관련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질적연구 - FGI(Focus Group Interview)
- 운동선수 집단에 대한 양적연구 - 설문조사
- 서울시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 기타 서울시 스포츠 폭력 근절방안 모색 등임

-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야로 활용하고자 함

-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서울시 조계 제,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의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로 활용
- 서울시의 바람직한 학교 스포츠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서울시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체육계 교육 및 의식개선 자료로 활용
- 서울시 체육계 인권보호 의식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나. 연구의 방법

○ 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문헌연구

- 스포츠 폭력의 개념, 유형과 특성 등 스포츠 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연구
- 전국 및 서울시의 스포츠 폭력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 스포츠 및 스포츠 폭력 관련 조직 운영에 대한 실무자료 분석
- 서울시의 스포츠 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내용 분석
- 중앙정부 및 체육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관리체계 등 실무상 주요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 관련 법령 및 실무운영자료 등 분석

- 국내의 스포츠 폭력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정방안 검토, 대안 제시
- 국외의 스포츠 폭력 대응 관련 법령 분석

3) 양적 연구

- 직장 운동 경기부, 대학 선수, 초·중·고 학생선수 등 스포츠 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인식태도 분석

4) 질적 연구

- 관련 연구자, 실무자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실무적 의견 청취 및 수렴
- 공동된 경험에 대한 구체적 의견 도출을 위해 FGI(그룹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되 응답자 특성별로 개별심층면접으로 보완

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폭력 및 스포츠 성폭력의 개념

가. 스포츠 폭력의 개념

-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학문적 개념에서의 스포츠 폭력(Violence in Sports)이란 스포츠 경기나 훈련에 코치 및 감독과 선수, 선수와 심판, 선수와 선수, 선수와 관중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을 지칭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됨(최병문, 2009)
- 또한 체육계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 및 지도자 또는 학부모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때리거나 신체에 상처가 나게 하는 것,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것, 겁을 주는 것, 강제적 강요와 금품갈취,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인격을 모독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집단 따돌림 등을 의미함(대한체육회, 2019).
- 그리고 스포츠 폭력의 개념은 동기적 정의와 행동적 정의로 구별되는데, 전자는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동의 의도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후자는 서로에게 상처나 해를 입히는 행동을 의미함
- 즉, 스포츠에서 폭력은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즉, 감정적 요소가 내포된 반발적 폭력과 감정이 배제된 과제 지향적인 도구적 폭력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스포츠 폭력은 반복성, 행위성, 힘의 불균형의 요소로 구성됨. 이 가운데 반복성은 단기적으로 발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행위성은 의도성이나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지칭하고, 힘의 불균형은 관계 안에서 특별한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강자가 약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결국 이와 같은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행위들이 스포츠 폭력이라 할 수 있음(대한체육회, 2019).
- 한편, 오늘날의 스포츠 폭력 현상은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뚜렷한 대안을 모색하기도 어려운 실정임(Coakley, 2007)
- 그 이유는 스포츠 폭력이라는 것이 한 가지의 단편적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예컨대, 지도자와 선수와의 관계 또는 선배와 후배의 관계, 지도자가 과거의 교육방법에 익숙해져 현재까지 똑같은

교육방식을 유지하게 되는 관행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스포츠 폭력에 대한 인습적 사고와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임 (김동규, 2018)

- 결국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 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어느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 겁을 먹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림 하는 것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한국체육철학회, 2015;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2019: 22)
- 또한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시간적·공간적 영역에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와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음(서울특별시체육회, 2021: 21)
- 아울러 스포츠 폭력은 지도자와 선수, 동료나 선후배 등 선수들뿐만 아니라 기관 책임자, 행정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스포츠를 매개로 함께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스포츠 폭력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표 2-1> 과 같음

<표 2-1> 스포츠계 폭력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구분		주요 내용
행위 여건	· 언제(시간) · 어디서(장소) · 스포츠 관련성 (관계)	· 스포츠와 관련된 시간·공간·관계 등 모든 영역 - 스포츠를 매개로 함께 활동하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 훈련, 경기, 합숙, 이동 등 스포츠 활동에 관련된 모든 시간과 이어지는 일상생활에서 - 경기장, 훈련장, 합숙소, 이동 차량 등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간에서
당사자	· 누가(행위자) · 누구에게(대상)	· 지도자와 선수, 동료나 선후배 선수 · 기관책임자, 자원봉사자, 행정 담당자 등 스포츠를 매개로 함께 활동하는 모든 사람
행위 수단	· 무엇을(내용) · 어떻게(방법)	· (불)이익 공여 의사 표시) ·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 신체적 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따돌림, 강요와 같은 언어적·정서적 폭력

※ 자료 : 서울특별시 체육회. (2021). 스포츠인권 침해 예방·대응 매뉴얼. p.21.

- 1) 좋은 평가 또는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거나 암시함으로써 성적 언동 또는 인권침해 행위를 감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인권침해 행위를 감수하지 않을 경우 낮은 평가 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고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스포츠 성폭력의 개념

- 흔히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됨(김태명, 2018)
- 그러므로 스포츠 성폭력이란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행위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함(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2019: 23)
-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지칭함
-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임(대한체육회 스포츠클린센터, 2019: 23).
- 따라서 스포츠 성희롱·성폭력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공간적·관계적 영역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총칭함
- 그러므로 여기에는 강간이나 성추행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괴롭힘이나 불쾌한 성적 농담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인 폭력 등이 모두 포함됨(서울특별시체육회, 2021: 33).

2. 스포츠 폭력의 원인과 특성

가. 스포츠 폭력의 일반적 발생원인

- 스포츠 폭력의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폭력의 재생산

- 소위 '폭력의 재생산' 또는 '폭력의 대물림'은 최초의 폭력행위가 한 차례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폭력행위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스포츠 폭력은 소속 팀의 승리, 성공을 위하여 수반되는 지도자, 선배 선수들의 폭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이는 그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구시대적 사고방

식, 직접적인 폭력 경험으로 인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짐

- 때문에 이러한 폭력 피해자가 결국 폭력 가해자로 바뀌는 폭력의 재생산 현상이 발생하게 됨

2) 묵인

- 스포츠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에 대한 용인과 묵인의 문화 역시 스포츠 폭력을 조장하는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음
- 예컨대, 스포츠 폭력은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서’, ‘보복 당할 것 같아서’,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적어 실태 파악 및 조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음
- 스포츠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스포츠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대인 간 공격적 행동이 용인되고 장려되기 까지 하는 유일한 환경임(황재욱·최재섭·권상현(2019))

3) 정당화

- 범죄학자 Matza와 Sykes는 사회과정이론 중 중화이론(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을 통해 범죄자들이 범죄를 보다 손쉽게 저지르는 것은 범죄행위 이후 그들의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합리화할 수 있는 일종의 중화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함
- 즉, 책임의 부인·가해의 부인·피해의 부인·비난자에 대한 비난·상위의 충성심에의 호소 등 모두 5가지의 중화기술이 발달한 사람들은 관습적인 가치와 태도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설사 자신의 행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자신들의 죄책감과 죄의식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는 이후의 범죄행위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임(전용재, 2021)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 폭력은 승리에 집착하는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력과 정신력 강화, 팀의 응집력 강화 그리고 지도자, 선후배, 동료사이의 권위주의적이며, 위계질서에 의해 폭력이 정당화 되고 있음(대한체육회, 2019).
- 스포츠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스포츠의 본질인 경쟁에 있어 공격성이나 폭력성은 승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으며 승리지상주의로 인해 폭력이 이상적인 가치로 각광받을 수 있음이 지적됨. 즉 스포츠에서 구성원들은 공격성과 폭력성에 쉽게 노출되고 폭력을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육영숙·최재섭, 2021)

나. 스포츠 폭력의 역사적·구조적 맥락에 따른 원인 분석

1) 스포츠 폭력의 역사적 관점

- 비록 최근 스포츠 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스포츠 폭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
- 특히, 스포츠 폭력과 같은 문제는 시대 및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기원은 스포츠가 대중화되고 사회적으로 엘리트 체육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음(유재구, 2021: 51-52).

가) 스포츠 폭력의 도입기

- 1970~1980년대 말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국민에 대한 탈정치화를 목적으로 한 관람 스포츠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임
- 특히, TV의 보급으로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씨름 등의 스포츠와 함께 1982년 야구 프로 리그가 출범하면서 축구, 농구, 배구가 프로화되었으며, 또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본격 준비한 시기로 학교체육 및 엘리트 체육의 개념이 도입된 시기이기도 함
- 그런데, 이 시기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기인한 일본의 주입 및 통제식 교육 체계를 따른 시기로 군사 활동에 가까운 학교체육 활동이 도입되었으며,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의 개념이 시작되었음
-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일정 수준의 성적을 창출하기 위해 스포츠 폭력이 만연하던 초기 시기라 할 수 있음

나) 스포츠 폭력의 성장기

- 1980년대 말~2000년대 중반까지는 스포츠의 세계화, 승리지상주의, 국가주의, 영웅주의가 주류를 이룬 시기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등 가히 스포츠가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가주의와 승리지상주의의 영광을 위해 선수의 인권과 윤리적 가치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며, 인권, 윤리, 폭력 등의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츠 폭력이 더욱 확대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음

다) 스포츠 폭력의 성숙기

- 2000년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에는 학교체육의 인식에 대한 변화폭이 큰 시기이며, 생활체육 시장의 확대와 엘리트 체육이 동시에 발전하는 시기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전에 스포츠 영웅주의, 승리지상주의의 영광을 경험한 어린이들이 이른바 스포츠 ‘키즈’ 세대로 전문적인 스포츠 교육을 받았으며, 일반학생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급격히 확장된 시기임
- 특히, 이 시기에는 국가 중심적 엘리트 체육 육성에서 개인화된 엘리트 체육이 발전하면서, 학교체육 및 체육계 전반에 걸쳐 인권 이슈가 시작된 시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던 스포츠 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본격 제기된 시점임

라) 스포츠 폭력의 변혁기

- 201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프로스포츠는 제자리 성장에 멈추었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긴 준비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 이 과정에서 국가주의 및 승리지상주의는 퇴색하는 등 이 시기에는 학교체육의 인식이 상당한 변화폭을 가졌으며, 엘리트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참여스포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201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스포츠의 공정성, 윤리, 인권과 같은 개념이 한국의 학교체육 가치의 핵심 이슈로 발전한 바 있음

2) 스포츠 폭력의 구조적 관점

가) 권력관계의 형성

- 스포츠에서 권력은 흡사 군대문화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매우 부정적인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권력에 의한 작용으로 권력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변 모두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됨(이학준, 2013: 1-20)
- 하지만 많은 이들이 권력 앞에 무기력한 것과 같이 스포츠계에서도 권력을 가진 관계자 및 지도자 선수들의 지배를 영속화시키며, 증대시키고 있음(이강우, 1999: 15-26)
- 그런데, 권력은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과 미리 경험해본 것을 쉽게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음. 그리고 권력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함(김동규, 2019: 27).
- 물론 권력이 사람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의한 충돌이 많아 단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음
- 예컨대, Rahim은 권력 현상에 대하여 조직의 스포츠지도자는 조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수들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력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의 행동, 태도, 신념, 목적, 욕구, 가치들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최옥진·고기태, 2013: 1247-1258), 이는 권력을 지도자와 선수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면 조직은 바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개개인의 역할과 업무를 갖는 조직들은 한 목표 하에 두는 스포츠 조직 원리에 있어서 구조의 기능수행 능력은 더욱 더 중요한 대목이라 볼 수 있음(전호문, 1995: 254-263).
-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스포츠 권력 지도자는 전근대적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 많았음
- 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한국의 스포츠는 권력과 연관 지어 순기능적인 면을 닦아가기보다는 옛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역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행태들은 스포츠 조직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가 이득만을 취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긍정적인 발전 없이 스포츠의 악폐습이 지속되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모하도록 만들게 됨(김동규, 2019: 28).
- 그래서 소위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포츠 조직 내 지도자와 선수 간에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고 노출시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적인 면을 만들고 역기능적인 면을 예방 또는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요청되고 있는 것임(김정하, 2000: 669-685)
- 이는 스포츠에서 권력에 대한 향후과제를 잘 제시하고 이끌어 나간다면 조직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스포츠 폭력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김동규, 2019: 28).

나) 교육의 후진성

- 한국의 교육은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오던 것에 안주하는 교육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나 체육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

지라 볼 수 있음

- 스포츠에서도 선수들을 길러내는 과정은 새로운 것 보다는 과거의 방법에 많이 의존해 오고 있으며,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 더 나아가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오래된 방식을 계속 고집해오고 있는 것임
- 이로 인해서 스포츠 폭력, 승부조작, 도핑 등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스포츠 폭력은 지도자들의 예전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육을 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김동규, 2019: 29).
- 특히, 스포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체벌은 경기력 향상이나 선수들의 정신력 강화에 필요한 훈련의 연장이라는 인식과 관행이 있어 폭력이 기량 강화를 위한 훈련의 한 형태로 위장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되었음(김현수, 2016: 1-9)
- 그리고 좋은 성적과 많은 대회 입상, 우승을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은 오래전에 사용했던 교육방식으로 그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시대가 거듭되면서도 바뀌지 않고 있음
- 이는 교육의 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체벌이 체육 스포츠계 내에서는 실력향상만을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용되고 있음
-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수들도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선수로서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많은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폭력, 구타 등을 체벌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수 있음
- 한편, 폭력에 대한 개념으로 Powell은 물리적 폭력·심리적 폭력·구조적 폭력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대별하여 살펴 볼 수 있다고 하였음(김정호, 2015 재인용)
- 반면에 체벌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유광욱·원유병, 2007: 105-116),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 그 행동을 억제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신체적 부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여 고통을 주는 교육적 수단으로 정의 될 수 있음(신동로, 1988)
-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양자는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스포츠 지도자들은 자신이 교육하는 선수들에게 가하는 처벌이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정당화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김동규, 2019: 30)

다) 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 다양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직·간접적으로 형법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김현동, 2004),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스

스포츠계의 폭력 행위는 오랜 악습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스포츠계의 고질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임(최병문, 2009: 257-278).

-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스포츠 안에서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처벌 또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음
- 스포츠 내의 처벌은 규정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행위자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장래가 유명한 선수라는 이유로 정당하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 있음
- 실제로 스포츠계를 보면 내부적으로 폭력행위에 따르는 책임 규명이 전혀 투명하지 않거나 혹은 매우 그 징계가 미미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적 법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대물림이 된다는 점이 지속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이흥구, 2011: 155-170)
- 그런데, 이와 같이 지속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면에는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내에서의 구조적 문제, 특히 상, 하 수직적인 구조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처벌이 스포츠 내에서 제대로 그 힘이 발휘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훈육, 체벌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처벌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임
- 이는 사실상 체벌이라는 것이 폭력의 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요소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정철호, 2012: 9-34)
- 또한 처벌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준이 내려져야하는데 체벌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기준을 생각하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제대로 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또 다른 관련 요인으로는 스포츠 내의 처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음
- 실제로 유소년 또는 청소년 스포츠에는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들은 유명한 지도자나 코치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게 하고 어느 정도의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운동선수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하여 어린 선수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한 채 계속 폭력을 체벌로써 둔갑하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음(김동규, 2019:

35).

다. 스포츠 폭력의 특성

스포츠 폭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각각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서울특별시체육회, 2021: 23-34)

1) 스포츠 폭력의 특성

가) 폭력의 용인

- 스포츠 분야 폭력은 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한 스포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체벌은 경기력 향상이나 선수들의 정신력 강화에 필요한 훈련의 연장이다’ 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폭력은 기량 강화를 위한 훈련의 한 형태로 위장될 수 있음

나) 폭력 피해 노출의 취약성

- 스포츠 분야 폭력은 운동 시간, 합숙 기간, 이동 시간 등 스포츠 활동에 관련된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경기장과 훈련장, 합숙소나 기숙사, 전지훈련 숙소, 이동 차량 등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다) 폭력의 내면화

- 스포츠 분야 폭력은 훈련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폭력의 내면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재생산을 낳기도 함. 그러나 스포츠의 직접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2) 스포츠 성폭력의 특성

- 스포츠 성폭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가) 폐쇄적 · 권위주의적 문화

-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주로 스포츠 영역에서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서 비롯됨. 특히, 남성 지도자와 여성 선수 사이의 성폭력은 성차별과 권위주의가 중첩된 구조에 기인하는 전형적인 성폭력 유형임
- 특히, 남성 지도자는 자신의 우월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여성 선수를 성적으로 길들이며, 이러한 사실은 스포츠 공동체의 폐쇄성과 가족적 유대로 인해 은폐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나) 성폭력의 왜곡

-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을 훈련, 교육, 치료, 규율, 체벌, 장난, 농담 등으로 왜곡하고 피해자는 이를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혼동하게 됨(국가인권위원회, 2010)

3. 스포츠 폭력의 특수성과 피해 결과

가. 스포츠 폭력의 환경적 특수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 등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스포츠 성폭력 환경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1) 스포츠 분야의 특수한 상황 및 기회 요인

- 스포츠 성폭력은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경기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탈의실, 합숙소, 호텔 등 숙박업소, 훈련장, 버스 등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같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고립된 환경적 특성을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고립된 환경적 특성은 다양한 폭력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선수들은 감독이나 코치 등 관리자의 효과적 관리, 감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2) 신뢰 혹은 가족 같은 관계

- 스포츠 성폭력은 주로 소속 팀 내에서 코치-선수, 선배-후배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평소 합숙 생활을 하며 신뢰 혹은 가족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관계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은폐되는 경우가 많음

3) 충성심을 중요시하는 문화

- 스포츠 선수들은 조직(팀) 생활을 하기에 코치-선수, 선배-후배 간 충성심을 중요시 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혀 있으며, 이러한 조직 규율에 어긋나는 선수는 조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러한 수직적 위계질서 문화는 성폭력을 당해도 저항하거나 외부에 알릴 수 없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함

나. 스포츠 (성)폭력의 피해결과

1) 정서적 피해

- 스포츠 분야의 폭력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분노, 불안, 공포, 우울, 소외감과 같은 정서적 피해로 이어지며, 폭력 피해자는 운동선수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어 의욕이 상실되고 운동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또한, 폭행이 반복될 경우 정신이상, 신체장애, 자살과 같은 심각한 행동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만성화된 폭력은 피해자를 미래의 가해자로 만들게 됨

2) 스포츠의 과학화 · 전문화 방해

- 스포츠 분야의 폭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체계와 방법을 찾기 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력 향상, 정신력이나 팀워크 강화 등에 매달려 폭력과 처벌을 일상화함으로써 스포츠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3) 선수의 경력과 진로 단절

- 스포츠 분야의 폭력은 선수의 경우 운동, 운동부 생활 등 집단생활에 적응하기 어

렵게 하며, 조직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운동 중단과 진로 단절을 가져와 은퇴 후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선수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함

4.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발생 실태

가. 스포츠 폭력의 유형

-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스포츠 폭력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폭력과 방관자 입장의 폭력, 정신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신적 폭력은 다시 언어적 행위와 관계적 행위,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로 구분됨(대한체육회, 2019).
- 이와 관련하여 김동규(2019)는 스포츠 폭력을 신체적 폭력과 성 폭력, 언어적 폭력, 관중폭력으로 구분한 바 있음
 - 신체적 폭력은 선수들에게 부정 정서를 심어주며, 대물림 될 수도 있는 폭력이라고 하였고, 성폭력은 스포츠의 수직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폭력으로 개념 정의함
 - 그리고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2차적으로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하였고 관중폭력은 과도하게 응원하는 집합행동을 바탕으로 일시적이고 비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정의한 바 있음
- 그리고 권순신(2020)은 스포츠 폭력에 대하여 신체적·물리적 폭력과 성 폭력, 언어적·정서적 폭력, 집단따돌림, 금품갈취로 구분하였음
 - 그런데, 스포츠 폭력 가운데 신체적·물리적 폭력을 경험하면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성폭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진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정서적 손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언어적·정서적 폭력과 사회정서적인 부적응을 보이며 심한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고 하였음
 - 아울러 스포츠계에서는 집단따돌림이나 일반적인 폭력보다 범죄성이 더욱 높은 금품갈취 역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함
- 유광욱·원유병(2007)은 스포츠 폭력을 선배가 후배에게 가하는 폭력과 지도자가 운동선수에게 가하는 폭력,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폭력으로 구분한 바 있음
 - 이 가운데 선배가 후배에게 가하는 폭력은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는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함
 - 그리고 지도자가 운동선수에게 가하는 폭력은 운동선수들의 인격이나 개성은 생각하지 않고 성적위주의 결과 지향적 문화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

하는 폭력은 운동선수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폭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 최병문(2009)은 스포츠 폭력의 유형을 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경기 중의 폭력과 훈련 중의 폭력, 그 밖의 스포츠관련 폭력으로 구분하였음
 - 먼저, 경기 중의 스포츠 폭력은 허가받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권투, 레슬링 등의 격투운동의 상해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의함
 - 반면에 훈련 중의 폭력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였고, 상대방이 싸움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격을 가할 때에는 정당방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음
- 이와 같은 스포츠 폭력 유형 구분 및 주요 사례는 <표 2-2> 와 같음

<표 2-2> 스포츠 폭력 유형 구분 및 주요 사례

유형 구분	주요 사례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력 향상이나 정신력 강화를 빙자하여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 훈련 태도나 성적 불량, 경기결과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 위계적인 규율과 통제 속에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 사전계획이나 합의 없이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훈련을 강요하는 행위 · 일정 시간 집단에서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 지도자의 분노, 좌절 또는 힘의 과시 등에서 비롯된 체벌과 폭력
언어 등으로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또는 전체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존감을 해치는 행위 · 권한이나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진로 선택이나 경기 참여를 제한하려는 협박이나 강요 · 대중 앞에서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사전 계획이나 상호 합의 없이 자유 시간, 귀가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조정하는 행위 ·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자료 : 서울특별시체육회. (2021). 스포츠 인권 침해 예방·대응 매뉴얼, p.27.

나. 스포츠 폭력의 발생실태

- 다른 일반적 통계와 달리 현재 스포츠 폭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공식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 자료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상황 전수 특별조사 결과, 그리고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결과, 2020년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스포츠 폭력의 발생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1) 학생선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가)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초·중·고 학생선수(63,211명)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신체폭력은 14.7%, 성희롱·성폭력은 6.7%에 달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선수 가운데 2.4%(438명)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57.5%(252명)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신체폭력은 초등학교 선수 12.9%(2,320명), 중학교 선수 15.0%(3,288명), 고등학교 선수 16.1%(2,832명)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선수 신체폭력은 일반 학교폭력 대비 2.6배나 높게 나타남(국회입법조사처, 2021: 1-2).

〈표 2-3〉 초·중·고 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 주요결과

(단위: 명, 건)

조사항목		조사대상 학생선수(B)	(피해)응답 학생선수	응답비율 (A/B*100)
폭력 및 성폭력	신체폭력	57,557*	8,440	14.7%
	성희롱·성폭력	57,557	3,829	6.7%
피해시 대처방법	소극적 대처 (미신고 등)		4,898	79.6%
	대처 이유	보복 등 우려	1,511	24.5%
		대처방법 모름	801	13.0%
수업참여 훈련시간	수업결손		15,824	27.5%
	장시간 훈련		35,386	61.5%

※ 주: *유효응답 **신체폭력 피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보도자료(2020. 10. 19).

나) 대학교 및 실업팀 성인선수 인권침해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교 운동선수 실태조사(102개 대학, 7,031명)에서 신체폭력 33%(1,613명), 언어폭력 31%(1,514명), 성폭력 9.6%(473명) 등으로 나타났고, 성폭력은 초·중·고 선수 피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실업팀 성인선수 실태조사(1,251명)에서는 이들이 주로 언어폭력 33.9%(424명), 신체폭력 15.3%(192명), 성폭력 경험 11.4%(143명), (성)폭력 목격경험 56.2%(704명)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매일 맞는 경우도 8.2%에 달하는 등 신체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다) 초·중·고 학생선수 합숙소 운영실태

- 2003년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초·중·고 합숙소 폐지 조치와 전면적인 조사를 권고한 바가 있었음
- 그러나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합숙소가 여전히 인권침해의 온상과 안전의 사각지대로 확인되었고, 체육중·고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 약 380개 중 157개 기숙사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하여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국회입법조사처, 2021: 2).

라) 최근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실시한 학생선수(2,083명)의 3년간 (성)폭력 등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 9.6%, 신체폭력 4.8%, 집단 따돌림 2.2%, 성희롱·성추행 1.5%, 성폭행 0.1%이 확인되었고, 가해자는 지도자 68.3%, 선배선수 50.9%, 동료선수 13.0% 등으로 파악되었음
- 그리고 교육부가 2020년 7월~8월에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59,401명)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초등학교 선수(1.8%)가 중·고등학교 선수(1.0%)보다 폭력피해율이 높았음
- 그리고 일반 학생선수(1.3%)가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1.2%)보다 폭력피해율이 높았으며, 가해자 519명 중 학생선수는 338명, 체육지도자는 155명, 교사는 7명, 기타 19명 등으로 학생선수가 65.1%를 차지하고 있었음(국회입법조사처, 2021: 2).

5. 스포츠 기본권과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

가. 스포츠 기본권

-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법의 관심 밖에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의 국내 현실임
- 그러나 오늘날 헌법상의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에까지 확대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임. 즉,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과 함께 이러한 기본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등이 등장하여 기본권의 영역은 확대일로에 있다고 할 것임(윤명선, 2010: 586).
- 또한 기본권은 국민의 주관적인 권리인 동시에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오늘날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복지국가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이나 단체의 적극적 배려 또한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임(윤명선, 2010: 580; 정승재 외, 2010: 270)
- 그러므로 이제는 반드시 소위 ‘스포츠권’이라는 스포츠와 관련된 기본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정승재, 2004: 1)
-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바 그 안에는 스포츠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학생선수의 선수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폭력은 이러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예가 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권, 소위 스포츠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성과주의에 빠져있는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차별이나 구타 등 일상적인 폭력의 문제는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의 구조적 병폐로 인해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목인되어 왔던 것이 현실임(정희준, 2007)
- 흔히, 스포츠를 그 내용에 의하여 구분하면 생활 스포츠와 전문(엘리트) 스포츠로 구분할 수 있는바(정승재, 2004: 14), 스포츠 폭력이 발생하는 영역은 대부분 전문 스포츠, 즉 엘리트 스포츠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이것은 결국 ‘엘리트 스포츠’가 일종의 ‘보여주는 스포츠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보다 고도의 기량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성과주의는 국가주도의 통제, 소수 엘리트선수의 육성, 일반사회와의 단절 등을 특징으로 한다(류태호 외, 2003: 32)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그런데,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복이란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생활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리 설명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협의로는 구체적 권리인 동시에 광의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포괄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입장임(윤명선, 2020: 440).
-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자연권적 권리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규정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별적 구체적 기본권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해석되고 있다.”(헌재 1997.7.16. 95헌가6 등 병합)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그 내용에 관하여도 일반적 행동자유권(헌재결 1991.6.3. 89헌마204 등),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헌재결 1991.6.3. 89헌마204 등), 자기결정권(헌재결 1998.1.24. 98헌가1 등), 문화향유권(헌재결 2004.5.27. 2003헌가1 등) 등 다양한 기본권을 들고 있음
-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본권, 특히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운동선수는 남녀를 불문하고 스포츠를 행복하게 즐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역시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스포츠선수의 행복추구권을 명문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스포츠선수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임
-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많은 스포츠선수들이 엘리트스포츠의 병폐에 의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과거 박은선 선수²⁾의 경우에 있어서도 엘리트 스포츠의 성과주의에 따른 대표적 피해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정승재, 2014: 158)

나. 스포츠 인권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 헌장에 의하면, 스포츠 인권이란 ‘인간답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인의 권리’로 정의(서울특별시체육회, 2021: 5)하는 가운데, 체육인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이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답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

2) 과거 여자축구선수로 출중한 기량을 선보이던 서울시청 소속 박은선 선수는 당시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소속된 6개 실업팀 감독들이 ‘성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박은선 선수를 WK리그에 계속 뛰게 하면 리그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몇몇 축구 지도자들의 반인권적·반여성적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바 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본 건을 성희롱으로 결론을 내렸고, 동년 5월 중순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감독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나 6명의 감독 중 2명만이 사퇴했고, 나머지 4명의 감독들에 대한 연맹의 징계는 고작 엄중경고로 끝났다(매일경제, 2014년 7월 30일자, “박은선, 러시아 출국…무슨일이 “혹시?”, <https://mk.co.kr/news/sports/view/2014/07/1046315/>).

- 이와 관련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 헌장은 다음 <표 2-4> 와 같음

<표 2-4> 스포츠 인권 헌장

구 분	내 용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헌장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장 스포츠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다. 제4장 스포츠 활동 참여는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제5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제6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7장 스포츠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8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자료: 서울특별시 체육회. (2021). 스포츠인권 침해 예방·대응 매뉴얼. p.7.

- 또한 스포츠 인권이란 모든 스포츠인이 존재의 일반적 가치로서 지니게 되는 동등한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말함
- 그러므로 스포츠 인권³⁾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폭력 및 성폭력 근절뿐만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권익 증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대한체육회, 2019).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활동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안으로서, 2020년 2월 4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의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 5일 공식 출범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 센터에서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다. 스포츠 기본권과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입법적 보완

3) 스포츠 인권 헌장은 다음과 같다. 제1장 :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스포츠는 육체로 하는 자아실현이며 자기표현 활동이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육체 능력을 배양하며 자신감과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체활동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2019: 21).

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 국회는 최근 체육계 (성)폭력과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3차례 개정한 바 있음
- 먼저, 2020년 1월 9일 개정을 통해서는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가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와 장려금 중지·환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장려금 중지 및 환수, 자격증 발급 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마련하였음
- 그리고 2020년 8월 4일 개정에서는 법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과 불공정계약 시정 요구,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상한 확대, 체육인 신고의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방법 규정,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권고, 신고자·피해자에 불이익조치 금지,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실태조사 실시·발표 등 제도적 기반과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또한 2020년 11월 19일 개정에서는 직장운동 경기부 상시 합숙훈련에 사생활 및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 유죄 확정자 명단 공표, 체육인 징계이력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음(국회입법조사처, 2021: 3).

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 국회는 학생선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을 2차례 개정한 바 있음
- 먼저, 2020년 9월 24일 개정에서는 학교체육 주기적 감독, 학교 체육 주요 지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생선수 및 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학생선수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실시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그리고 2021년 2월 26일 개정에서는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 시 경기대회 참가 원칙적 금지, 고등학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 허용, 학기 중 합숙훈련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학생선수 안전 및 인권보호 조치 의무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음(국회입법조사처, 2021: 3)

2)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 정부는 그동안 스포츠계 폐쇄성과 엘리트체육 등으로 체육계 (성)폭력이 반복되는 상황과 과거 대책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2019. 1. 25.)을 시작으로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2020. 8. 28),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2020. 12. 11),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2021. 2. 24) 등을 내놓은 바 있음(국회입법조사처, 2021: 3-4).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 현황과 최근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및 추진 과제 발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학교운동지도자 징계 및 이력 확인을 위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처벌강화를 위한 체육단체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그리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장기적인 정책 권고 사항을 제외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반영되어 입법화됨
- 현재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사항 지속 이행, 체육지도자·실업팀 등 제도개선과 실태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고,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실업팀·프로스포츠 선수 선발에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한,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제재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 과학적 훈련방식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나) 교육부의 추진현황과 최근 정책

-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운동부와 합숙훈련 전반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최저 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하며,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2020년 7~8월에는 스포츠 분야 학생선수(59,401명)의 (성)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680명(1.2%)의 피해를 파악하였고, 가해자 총 519명 중 310명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아울러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문기관 연계 피해자 상담, 학교폭력사항 특기자 선발에 참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매년 전수조사, 특기자전형 등에 최저학력기준 반영 확대, 학기별 1회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음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 및 권고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하여 초·중·고 학생선

수 인권상황 전수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6월 23일에는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으며, 현재 각 기관의 이행계획을 검토 중임

〈2-5〉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별 주요 권고 사항

기관명	주요 권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 밖에서도 학생선수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체 학생선수를 위한 인권보호 조치 마련 등
교육부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상시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법률·지침 개정 등
시·도 교육청	· 학교운동부 채용 시 선수인권 보호 노력 반영 ·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신고방법 교육강화,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체계와의 연계 확대 · 학교 내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원체계 확장 등
대한체육회	· 개인 활동 학생선수, 지도자 관리·감독 체계 마련 · 적정 훈련시간 및 휴식 가이드라인 마련 · 가해자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4.

3) 서울시 차원의 관련 정책

가) 서울시 인권 중심 스포츠 거버넌스

- 서울시는 2020년 9월 9일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대책은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서울특별시체육회, 2021: 11).
- 서울시 스포츠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스포츠 거버넌스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 예방 체계 강화, 인권 침해 피해 구제 체계 및 절차의 효과성 제고, 안전한 스포츠 중심의 스포츠 거버넌스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6〉 서울시 스포츠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스포츠 거버넌스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	· 성적 지상주의 문화에서 안전한 스포츠 문화로
예방 체계 강화	·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신설 ·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인권 침해 피해 구제 체계 및 절차의 효과성 제고	· 핫라인 개설 -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대응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안전한 스포츠 중심의 스포츠 거버넌스	·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일 체계 구축 · 서울시 - 직장 운동부 간 정례 간담회 운영 · 「(가칭) 서울시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 자료 : 서울특별시체육회. (2021). 스포츠 인권 침해 예방·대응 매뉴얼, p. 11.

나) 기타 서울특별시의 관련 정책 추진 내용

○ 한편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인권 중심 스포츠 거버넌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을 비롯하여 선수단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대상 교육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 신설 및 개선한 바 있음(서울특별시체육회, 2021: 11-12).

①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하여 인권 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스포츠권 보장까지 포괄하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를 신설하였음

② 선수단 합숙환경 개선

○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하였음
○ 합숙소는 (가칭)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2~3인 1실인 거주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하였음

③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 있어 성적 평가의 비중은 획기적으로 낮추고(90%→50%),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④ 지도자 및 선수대상 교육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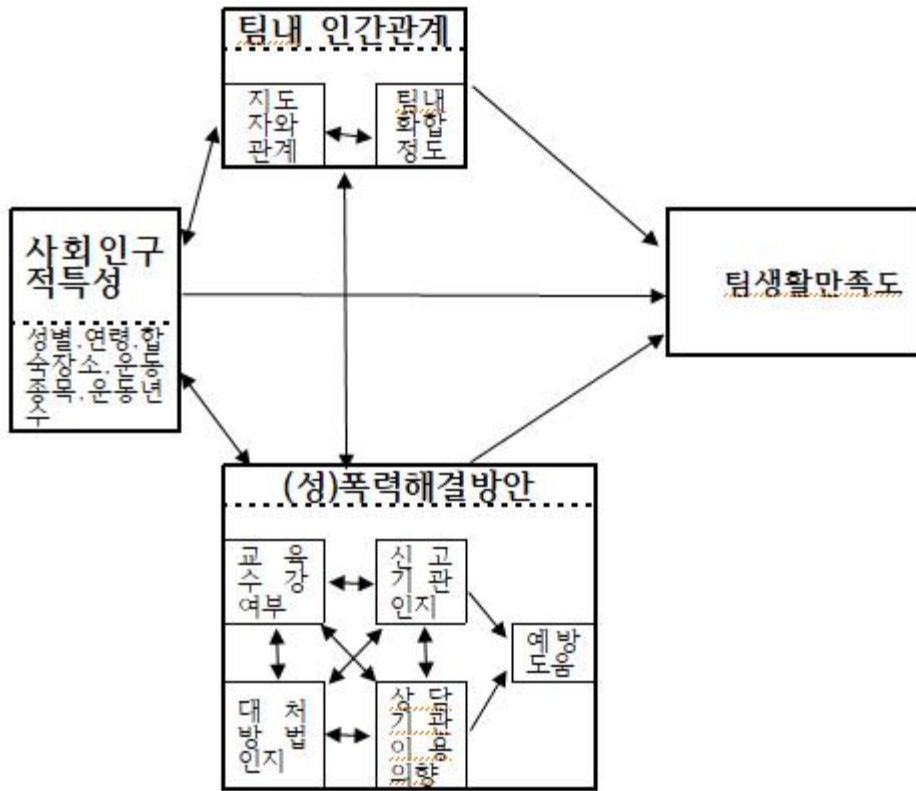
- 지도자와 선수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중인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음

Ⅲ. 스포츠 폭력 예방에 관한 인식태도 분석

1. 연구의 모형

- 앞에서 스포츠 폭력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엘리트 스포츠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충분조건임을 살펴보았음
- 더 나아가 스포츠과학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향상, 국민의 행복 실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 체육전문인력 양성과 스포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스포츠 폭력의 문제는 꼭 잡고 넘어가야만 되는 문제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임
-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수들의 팀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은 크게 폭력/성폭력 해결방안과 팀 내 인간관계 그리고 팀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됨
- 이 가운데, 먼저 (성)폭력 해결방안은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그리고 (성)폭력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그리고 팀 내 인간관계는 지도자와의 관계와 팀 내 화합정도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되었음
- 또한 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은 물론 합숙장소, 운동종목, 운동연수에 대한 항목들이 추가로 조사되었음
- 이들 변인간의 연구모형은 그림과 같음

〈그림 3-1〉 연구의 모형



※ 참고 : ↔ 상관관계 → 인과관계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가. 자료수집

- 본 장의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자료수집 방법을 살펴보면, 조사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음 표본의 추출은 단순 무작위 표집방법(simple random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였음
- 구체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예비조사로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후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질문항목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였음
- 본 설문조사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시의 스포츠 분야 종사자 및 운동선수 총 200명을 대상으로 'NAVER 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데 충실히 응답하여 제출한 설문지 11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나.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19.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항별 인식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더불어 각 집단별 응답내용에 대한 비교를 위해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t-test와 분산분석(ANOVA), 회귀분석(Regression)의 방법을 통해 응답자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하였음

다. 조사 및 분석내용

- 본 조사에서는 이창훈 등(2018)이 수행한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함
- 구체적인 조사 및 분석내용으로는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 운동 종목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응답자의 팀에 대한 일반적 질문, (성)폭력 피해 경험 여부, 최근 1년 동안의 구체적 체벌 경험, 폭력/성폭력 해결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 지도자(감독, 코치 포함)와 선수 관계에 대한 경험과 의견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라. 설문지 구성

- 조사내용에 따라 설문 문항들은 크게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의 인구 사회적 변인과 합숙장소, 운동종목, 운동연수를 알아보았고, 스포츠 폭력에 대한 대책방안과 관련해서 크게 폭력/성폭력 해결방안과 팀 내 인간관계 그리고 팀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3개 항목을 설정하였음
- 여기서 폭력/성폭력 해결방안은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그리고 (성)폭력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의 5개 변인으로 구성되었고, 팀 내 인간관계는 지도자와의 관계와 팀 내 화합정도의 2개 변인으로, 팀 생활 만족도는 1개 변인으로 하고 본 조사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음
- 이러한 변인들을 구성하는 설문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

교육 수강 여부는 ‘선수 생활 기간 동안 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받아 본 적이 있으면 교육을 몇 번 받았나’를 설문했고,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를 질문하였음

- 또한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는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은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를 설문하여 각각 1문항으로 측정하였음
- 이러한 설문과 더불어 마지막에는 (성)폭력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폭력 예방 교육/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를 설문하였음
- 그리고 팀 내 인간관계를 확인하는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은 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나는 우리 팀의 지도자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내 운동 경력에 지도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지도자를 신뢰한다’ ‘나는 우리 지도자를 존중한다’ ‘나는 우리 지도자가 나의 실력 향상을 위해 쏟은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였음
- 또한 팀 내 화합정도의 변인도 ‘내가 실수를 하면 팀원들은 나를 격려한다’ ‘팀원들과 나는 서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팀원들과 나는 운동(경기)을 할 때 서로 보호하고 도와준다’ ‘팀원들과 나는 재밌는 일들을 함께 한다’ ‘팀원들과 나는 서로 다투했을 때 쉽게 화해한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은 ‘귀하는 현재 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의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이들 각각의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폭력/성폭력 해결방안 항목은 ①아니오(없다) ② 예(있다)로 응답하도록 했고, (성)폭력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 항목과 팀 내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지도자와의 관계와 팀 내 화합정도 변인,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팀 생활 만족도 변인에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1~5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음 그리고 점수는 설문 내용에 따라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따라서 각 변인의 인식점수는 1~2점 혹은 1~5점 사이에 분포하며, 모든 변인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것임

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 조사 변인의 타당성은 대부분 변인이 선행연구에서 검토 조사된 항목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분석은 하지 않았고 신뢰도 검증은 먼저 변인을 구성하는 각 문항들의 평균

(M)과 표준편차(SD), 그리고 항목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r. Pr)를 살펴보았음

- 그 후 변인을 구성하는 각 문항 구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음

1) (성)폭력 해결방안과 팀 생활 만족도

- 폭력/성폭력 해결방안을 구성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성)폭력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 그리고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은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 구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볼 필요가 없었음. 따라서 각 변인(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 보고,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음
- 그 결과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의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 변인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87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폭력/성폭력 해결방안을 구성하는 나머지 4개 변인 중에서는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 수강 경험'이 1.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신고/상담기관 이용 의향'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 인지 여부'의 순이었음
- 변인(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 수강'은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Pr=.173), '신고/상담기관 이용 의향'(Pr=.191)과 정적(正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고,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는 '폭력예방에 도움'(Pr=.301) '신고/상담기관 인지'(Pr=.289)와 정적 상관성을 보여주었음
- 그리고 '신고/상담기관 인지'와 '이용 의향'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Pr=.443)를 보여주고 있음

〈표 3-1〉 (성)폭력 해결방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110	1	2	1.62	.488
폭력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110	1	2	1.02	.134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110	1	2	1.18	.387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102	1	2	1.23	.420
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폭력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110	2	5	3.87	.646

〈표 3-2〉 (성)폭력 해결방안의 항목 간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1.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1			
2. 폭력예방법/성폭력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173*	1		
3. 폭력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094	.301**	1	
4.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066	.289**	.189	1
5.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191*	-.076	.030	.443**

2) 팀 내 인간관계

○ 팀 내 인간관계는 ‘지도자와의 관계’와 ‘팀 내 화합정도’의 2개 변인으로 나뉘어 분석되었음

가) 지도자와 관계

- ‘지도자와 관계’ 변인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 먼저 5개 항목들의 평균치는 4.27~4.64로 높은 편이었다. ‘지금까지 내 운동경력에 지도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역환산)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우리 팀의 지도자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역환산)도 4.63으로 나타났음
- 반면 ‘나는 우리 지도자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나는 우리 지도자가 나의 실력향상을 위해 쏟은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4.31이었음
- 그리고 이들 5개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s r. Pr)가 .209~.859로 모두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문항간에 높은 상관성으로 하나의 변인으로 성립 가능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신뢰도는 문항 구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음 그 결과 5개 항목의 Cronbach’s α 계수는 .817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3〉 지도자와 관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나는 우리 팀의 지도자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4.63	.788	110
지금까지 내 운동경력에 지도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4.64	.763	110
나는 우리 지도자를 신뢰한다.	4.27	.789	110
나는 우리 지도자를 존중한다.	4.35	.698	110
나는 우리 지도자가 나의 실력향상을 위해 쏟은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4.31	.687	110

〈표 3-4〉 지도자와 관계 변인의 항목 간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1.나는 우리 팀의 지도자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지금까지 내 운동경력에 지도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459**	1			
3.나는 우리 지도자를 신뢰한다.	.209*	.334**	1		
4.나는 우리 지도자를 존중한다.	.292**	.347**	.772**	1	
5.나는 우리 지도자가 나의 실력향상을 위해 쏟은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367**	.356**	.723**	.859**	1

〈표 3-5〉 지도자와 관계 변인의 신뢰도 통계량

Cronbach's α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810	.817	5

3) 팀원의 화합

- ‘팀원의 화합’ 변인도 동일하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5개 항목들의 평균치는 3.85~4.44로 높은 편이었음
- ‘내가 실수를 하면 팀원들은 나를 격려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팀원들과 나는 운동(경기)을 할 때 서로 보호하고 도와준다’는 응답도 4.26으로 나타남
- 반면 ‘팀원들과 나는 서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팀원들과 나는 재밌는 일들을 함께 한다’는 응답이 4.13이었음
- 그리고 이들 5개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s r. Pr)가 .200~.753로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문 항목에 유의미한 상관성으로 하나의 변인으로 성립 가능할 수 있는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신뢰도는 문항 구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5개 항목의 Cronbach's α 계수는 .870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6〉 팀원의 화합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내가 실수를 하면 팀원들은 나를 격려한다.	4.44	.773	110
팀원들과 나는 서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3.85	.880	110
팀원들과 나는 운동(경기)을 할 때 서로 보호하고 도와준다.	4.26	.616	110
팀원들과 나는 재밌는 일들을 함께한다.	4.13	.825	110
팀원들과 나는 서로 다투었을 때 쉽게 화해한다.	4.21	.731	110

〈표 3-7〉 팀원의 화합 변인의 항목 간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1.내가 실수를 하면 팀원들은 나를 격려한다.	1				
2.팀원들과 나는 서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289**	1			
3.팀원들과 나는 운동(경기)을 할 때 서로 보호하고 도와준다.	.566**	.753**	1		
4.팀원들과 나는 재밌는 일들을 함께한다.	.200*	.823**	.746**	1	
5.팀원들과 나는 서로 다투었을 때 쉽게 화해한다.	.422**	.636**	.671**	.625**	1

〈표 3-8〉 팀원의 화합 변인의 신뢰도 통계량

Cronbach's α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수
.863	.870	5

- 이상으로 설정한 각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1개 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을 제외한 팀 내 인간관계의 '지도자와 관계' '팀원의 화합' 변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0.8 이상으로 나타나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기 충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⁴⁾

4)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 엄격하게는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 가능하다.

3. 분석결과

가.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별, 합숙장소, 운동종목, 운동경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 86.4%, 여자 13.6%로 남성이 훨씬 많았고, 연령은 20대가 51.8%로 가장 많았으며 10대는 48.2%였다. 연령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세에서 25세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20세(20.9%)와 19세(20.0%)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19.65세였음
- 조사대상자들의 합숙장소는 학교 내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47.3%로 가장 많았고 외부 전용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44.5%로 낮지 않은 비율이었으며, 기타 시설 사용자들은 8.2%로 대개 숙박업소 등의 경우였음
- 조사대상자들의 운동종목은 축구가 69.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 펜싱(10.0%) 볼스레이(4.5%) 승마(4.5%) 태권도(4.5%)도 일부 있었다. 전체적으로 11개의 운동종목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들이 지금까지 운동을 해온 년수를 확인한 결과, 6-9년이 50.0%로 절반이었고 다음은 10년 이상(30.0%) 5년 이하(20%)의 순이었으며, 3년 이하의 경우가 6.4% 정도였고 12년 이상의 경우는 8.1%로 보아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계속 해당 운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 운동경력의 분포는 2~15년이었고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운동경력은 8.05년으로 집계됨

〈표 3-9〉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기타
성별	남자	95	86.4	
	여자	15	13.6	
연령	10대	53	48.2	평균 19.65세 SD 3.716
	20대	57	51.8	
합숙장소	학교 내 숙소	52	47.3	
	외부전용숙소	49	44.5	
	기타(숙박업소 등)	9	8.2	
운동종목	축구	76	69.1	
	축구 외	34	30.9	
운동연수	5년 이하	22	20.0	평균 8.05년 SD 2.772
	6-9년	55	50.0	
	10년 이상	33	30.0	

〈표 3-10〉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분포

연령	빈도	퍼센트
15	5	4.5
16	4	3.6
17	11	10.0
18	11	10.0
19	22	20.0
20	23	20.9
21	14	12.7
22	12	10.9
23	1	.9
24	2	1.8
25	5	4.5
합계	110	100.0

〈표 3-11〉 조사대상자들의 운동종목

종목	빈도	퍼센트
루지	1	.9
봅슬레이	5	4.5
봅슬레이스켈레톤	1	.9
스켈레톤	2	1.8
승마	5	4.5
운동	1	.9
축구	76	69.1
카누	2	1.8
태권도	5	4.5
펜싱	11	10.0
하키	1	.9
합계	110	100.0

〈표 3-12〉 조사대상자들의 운동경력

운동 연수	빈도	퍼센트
2	1	.9
3	6	5.5
4	6	5.5
5	9	8.2
6	9	8.2
7	11	10.0
8	16	14.5
9	19	17.3
10	18	16.4
11	6	5.5
12	4	3.6
14	2	1.8
15	3	2.7
합계	110	100.0

나. 분야별 분석결과

- 이하에서는 본 조사의 설문에서 설정한 8개 변인, 곧 종속변인인 ‘팀 생활 만족도’, 폭력/성폭력 해결방안을 위한 5개 변인인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 그리고 팀 내 인간관계를 확인하는 2개 변인인 ‘지도자와 관계’, ‘팀원 화합정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인구 사회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음. 먼저 종속변인인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을 살펴보고 난 뒤 ‘팀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설명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함

1) 폭력/성폭력 해결방안

- 폭력/성폭력 해결방안 항목은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의 4개 변인과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의 1개 변인으로 모두 5개 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서는 먼저 앞의 4개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 우선 전체적으로 4개 변인의 항목별 빈도분석을 보면,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여부’에 대한 내용이 98.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 인지여부’도 81.8%로 높은 편이었고, 이에 비해 적지 않은 비율이긴 하지만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경험’이 61.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3〉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빈도분석

구 분	예(있다)	아니오(없다)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61.8(68)	38.2(42)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98.2(108)	1.8(2)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81.8(90)	18.2(20)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71.8(79)	20.9(23)

○ 이하에서는 각 변인별로 살펴보고자 함

가)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

- 전체적으로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경험'이 61.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경험'의 횟수를 확인해본 결과,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가 7.0%였고 그 외는 1~20회의 분포를 보였으며 2회가 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회(18.6%) 1회(11.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자의 교육이수 경험 평균 횟수는 6.16회(SD=15.098)였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육경험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표 3-14〉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수강 횟수

교육 횟수	백분율	교육 횟수	백분율
0	7.0	6	2.3
1	11.6	8	4.7
2	23.3	9	4.7
3	18.6	10	4.7
4	9.3	20	4.6
5	9.3	합계	100.0
		`평균 6.16회, SD 15.098	

- 이러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가 사회인구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였음
- 그 결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의 경우는 남성(60.0%)에 비해 여성들(73.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합숙장소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외부전용 숙소(55.1%)에 합숙하는 경우보다 학교 내 숙소에 합숙하는 경우(67.3%)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음
- 연령별로는 20대(56.1%)에 비해 오히려 10대(67.9%)들이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많았고, 운동종목별로는 축구나 그 외의 종목에서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
- 운동을 한 연수별로 살펴보면, 이 역시 10년 이상 운동을 오래한 선수들(61.8%)이나 6-9년 정도 선수들(60.0%)보다도 오히려 5년 이하로 운동한 선수들(81.8%)이 훨씬 교육을 수강한 경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함

〈표 3-15〉 성별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경험

구 분			선수생활기간 동안 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전체
			없다	있다	
성별	남자	빈도	38	57	95
		%	40.0	60.0	100.0
	여자	빈도	4	11	15
		%	26.7	73.3	100.0
전체		빈도	42	68	110
		%	38.2	61.8	100.0

$\chi^2 = .976$ df=1

〈3-16〉 합숙 장소별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경험

구 분			선수생활기간 동안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전체
			없다	있다	
합숙 장소	학교 내 숙소	빈도	17	35	52
		%	32.7	67.3	100.0
	외부전용숙소	빈도	22	27	49
		%	44.9	55.1	100.0
	기타	빈도	3	6	9
		%	33.3	66.7	100.0
전체		빈도	42	68	110
		%	38.2	61.8	100.0

$\chi^2 = 1.690$ df=2

〈표 3-17〉 연령별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경험

구 분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전체
			없다	있다	
연령	10대	빈도	17	36	53
		%	32.1	67.9	100.0
	20대	빈도	25	32	57
		%	43.9	56.1	100.0
전체		빈도	42	68	110
		%	38.2	61.8	100.0

$\chi^2 = 1.616$ df=1

〈표 3-18〉 운동 종목별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경험

구 분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전체
			없다	있다	
운동종목	축구	빈도	29	47	76
		%	38.2	61.8	100.0
	축구 외	빈도	13	21	34
		%	38.2	61.8	100.0
전체		빈도	42	68	110
		%	38.2	61.8	100.0

$\chi^2=1.601$ df=1

〈표 3-19〉 운동 연수별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경험

구 분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전체
			없다	있다	
운동연수	5년이하	빈도	4	18	22
		%	18.2	81.8	100.0
	6-9년	빈도	22	33	55
		%	40.0	60.0	100.0
	10년이상	빈도	16	17	33
		%	48.5	51.5	100.0
전체		빈도	42	68	110
		%	38.2	61.8	100.0

$\chi^2=5.289$ df=2 p = .07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

-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98.2%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41.1%가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은 ‘학교 또는 소속팀에서 전문 강사(혹은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18.7%) ‘학교에서 동영상 감상을 통해’(17.9%) ‘팀 지도자의 교육을 통해’(11.9%)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0〉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 경로

인지경로	빈도	퍼센트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교육을 통해	55	41.1
학교 또는 소속팀에서 전문 강사(혹은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	25	18.7
학교에서 동영상 감상을 통해	24	17.9
팀 지도자의 교육을 통해	16	11.9
부모님, 친구 등 주변사람들을 통해	7	5.2
혼자 책을 통해	-	-
매스컴(TV, 신문 등)을 통해	3	2.2
기타	4	3.0
합계	134	100.0

- 이러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가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적 특성은 없었음. 다만 성별로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합숙장소별로는 학교 밖의 숙소에 합숙하는 경우보다는 학교 내 숙소를 이용하는 선수들이, 연령별로는 10대보다 20대들이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을 보다 많이 알고 있었음
- 또한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차이가 너무 미세했고, 운동 연수별로는 오래 운동한 선수들보다는 5년 이하의 경우가 폭력,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 성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여부

구 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성별	남자	빈도	2	93	95
		%	2.1	97.9	100.0
	여자	빈도	0	15	15
		%	0.0	100.0	100.0
전체		빈도	2	108	110
		%	1.8	98.2	100.0

$\chi^2 = .322$ df=1

$\chi^2 = 5.330$ df=2 p = .07

〈표 3-22〉 합숙장소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여부

구 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전체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합숙 장소	학교 내 숙소	빈도	0	52	52
		%	0.0	100.0	100.0
	외부전용 숙소	빈도	1	48	49
		%	2.0	98.0	100.0
	기타	빈도	1	8	9
		%	11.1	88.9	100.0
전체		빈도	2	108	110
		%	1.8	98.2	100.0

〈표 3-23〉 연령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여부

구 분			폭력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전체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연령	10대	빈도	2	51	53
		%	3.8	96.2	100.0
	20대	빈도	0	57	57
		%	0.0	100.0	100.0
전체		빈도	2	108	110
		%	1.8	98.2	100.0

$\chi^2=2.191$ df=1

〈표 3-24〉 운동 종목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여부

구 분			폭력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전체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운동 종목	축구	빈도	1	75	76
		%	1.3	98.7	100.0
	축구 외	빈도	1	33	34
		%	2.9	97.1	100.0
전체		빈도	2	108	110
		%	1.8	98.2	100.0

$\chi^2=.348$ df=1

〈표 3-25〉 운동 연수별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여부

구 분			폭력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 시나요?		전체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운동 연수	5년 이하	빈도	0	22	22
		%	0.0	100.0	100.0
	6-9년	빈도	1	54	55
		%	1.8	98.2	100.0
	10년 이상	빈도	1	32	33
		%	3.0	97.0	100.0
전체		빈도	2	108	110
		%	1.8	98.2	100.0

$\chi^2 = .679$ df=2

다)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81.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합숙장소에 따라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줌
- 곧 학교 내 숙소 이용자(76.9%)보다는 외부 전용 숙소를 이용하는 선수들(91.8%)이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 < .05$)
- 그 외의 사회인구적 특성들에 의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남성들(81.8%)에 비해 여성들(86.7%), 10대(77.4%) 보다 20대(86.0%)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인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많았고, 축구선수들(80.3%)보다는 축구 외의 선수들(85.3%), 운동경력이 6~9년(78.2%)에 비해 5년 이하(81.8%)와 10년 이상 운동한 선수들(87.9%)이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표 3-26〉 성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구 분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전체
			아니오	예	
성별	남자	빈도	18	77	95
		%	18.9	81.1	100.0
	여자	빈도	2	13	15
		%	13.3	86.7	100.0
전체		빈도	20	90	110
		%	18.2	81.8	100.0

$\chi^2 = .274$ df=1

〈표 3-27〉 합숙장소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구 분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전체
			아니오	예	
합숙장소	학교 내 숙소	빈도	12	40	52
		%	23.1	76.9	100.0
	외부전용 숙소	빈도	4	45	49
		%	8.2	91.8	100.0
	기타	빈도	4	5	9
		%	44.4	55.6	100.0
전체		빈도	20	90	110
		%	18.2	81.8	100.0

$\chi^2=8.317$ df=2 * p < .05

〈표 3-28〉 연령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구 분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전체
			아니오	예	
연령	10대	빈도	12	41	53
		%	22.6	77.4	100.0
	20대	빈도	8	49	57
		%	14.0	86.0	100.0
전체		빈도	20	90	110
		%	18.2	81.8	100.0

$\chi^2=1.367$ df=1

〈표 3-29〉 운동종목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구 분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전체
			아니오	예	
운동 종목	축구	빈도	15	61	76
		%	19.7	80.3	100.0
	축구 외	빈도	5	29	34
		%	14.7	85.3	100.0
전체		빈도	20	90	110
		%	18.2	81.8	100.0

$\chi^2=.400$ df=1

〈표 3-30〉 운동 연수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구 분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전체
			아니오	예	
운동 연수	5년 이하	빈도	4	18	22
		%	18.2	81.8	100.0
	6-9년	빈도	12	43	55
		%	21.8	78.2	100.0
	10년 이상	빈도	4	29	33
		%	12.1	87.9	100.0
전체		빈도	20	90	110
		%	18.2	81.8	100.0

$\chi^2=1.304$ df=2

라)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은 71.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한 결과, 다수가 응답을 기피하고 있었지만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가 각각 12.5%로 나타남
- 다음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이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본 결과, 합숙장소와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내 숙소를 이용하는 선수들(60.9%)보다 외부 전용 숙소를 이용하는 선수들(93.8%)이 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많다고 응답했고(p < .01), 연령별로는 10대들(67.3%)에 비해 20대(86.8%)의 선수들이 이용할 의향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p < .05),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성별로는 남성들(75.3%)에 비해 여성들(92.3%), 운동종목별로는 축구(75.7%)보다는 축구 외(82.1%)의 선수들이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운동 연수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의향이 많아 5년 이하가 70.6%인데 비해 10년 이상 선수들이 87.5%로 나타나고 있었음

〈표 3-31〉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이유	퍼센트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12.5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12.5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	12.5
기타	62.5
합계	100.0

〈표 3-32〉 성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구분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전체
			아니오	예	
성별	남자	빈도	22	67	89
		%	24.7	75.3	100.0
	여자	빈도	1	12	13
		%	7.7	92.3	100.0
전체		빈도	23	79	102
		%	22.5	77.5	100.0

$\chi^2=1.883$ df=1

〈표 3-33〉 합숙장소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구분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전체	
			아니오	예		
합숙 장소	학교 내 숙소	빈도	18	28	46	
		%	39.1	60.9	100.0	
	외부전용 숙소	빈도	3	45	48	
		%	6.3	93.8	100.0	
	기타	빈도	2	6	8	
		%	25.0	75.0	100.0	
	전체		빈도	23	79	102
			%	22.5	77.5	100.0

$\chi^2=14.571$ df=2 * p < .01

〈표 3-34〉 연령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구분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전체
			아니오	예	
연령	10대	빈도	16	33	49
		%	32.7	67.3	100.0
	20대	빈도	7	46	53
		%	13.2	86.8	100.0
전체		빈도	23	79	102
		%	22.5	77.5	100.0

$\chi^2=5.513$ df=1 * p < .05

〈표 3-35〉 운동 종목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구분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전체
			아니오	예	
운동종목	축구	빈도	18	56	74
		%	24.3	75.7	100.0
	축구 외	빈도	5	23	28
		%	17.9	82.1	100.0
전체		빈도	23	79	102
		%	22.5	77.5	100.0

$\chi^2 = .486$ df=1

〈표 3-36〉 운동 연수별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구분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전체
			아니오	예	
운동 연수	5년 이하	빈도	5	12	17
		%	29.4	70.6	100.0
	6-9년	빈도	14	39	53
		%	26.4	73.6	100.0
	10년 이상	빈도	4	28	32
		%	12.5	87.5	100.0
전체		빈도	23	79	102
		%	22.5	77.5	100.0

$\chi^2 = 2.762$ df=2

마) 종합적 검토

- 다음은 종합적으로 이상의 4개 변인들의 평균차를 비교해 보았음. 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 수강 경험’과 ‘신고/상담기관 이용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를 보여주고 있었음
- 구체적으로 먼저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남성들(M=1.60)에 비해 여성들(M=1.73)이 수강 경험이 많다고 응답했고,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도 남성들(M=1.75) 보다는 여성들(M=1.92)이 의향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었음
-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p < .05)

〈표 3-37〉 성별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남자	95	1.60	.492	7.128**
	여자	15	1.73	.458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남자	95	1.98	.144	1.323
	여자	15	2.00	.000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남자	95	1.81	.394	1.233
	여자	15	1.87	.352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남자	89	1.75	.434	12.276**
	여자	13	1.92	.277	

** p < .01

- 이어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연령별로는 4개 변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는 20대(M=1.56) 보다는 10대(M=1.68)들이 수강경험이 많았고,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가’는 10대(M=1.96)에 비해 20대(M=2.00)가 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음
- 그리고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는가’는 10대(M=1.77) 보다는 20대(M=1.86),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도 10대(M=1.67)에 비해 20대(M=1.87)가 그럴 의향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p < .05).
- 그러나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고 그 차이도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38〉 연령별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구분	나이	N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10대	53	1.68	.471	5.627*
	20대	57	1.56	.501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10대	53	1.96	.192	9.510**
	20대	57	2.00	.000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10대	53	1.77	.423	5.560*
	20대	57	1.86	.350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10대	49	1.67	.474	24.609**
	20대	53	1.87	.342	

* p < .05 ** p < .01

〈표 3-39〉 운동종목별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구분	운동 종목	N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축구	76	1.62	.489	.006
	축구 외	34	1.62	.493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 법을 알고 계시나요?	축구	76	1.99	.115	1.369
	축구 외	34	1.97	.171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 나요?	축구	76	1.80	.401	1.689
	축구 외	34	1.85	.359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축구	74	1.76	.432	2.148
	축구 외	28	1.82	.390	

- 합숙장소에 따라서는 ‘신고/상담기관 인지 여부’와 ‘신고/상담기관 이용 의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는가’는 학교 내 숙소 이용자(M=1.77) 보다 외부 전용 숙소 이용자(M=1.92),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도 학교 내 숙소(M=1.61)에 비해 외부 전용 숙소(M=1.94) 합숙자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음(p < .05)
- 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외부 전용 숙소(M=1.55) 보다는 학교 내 숙소(M=1.67), 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 정도는 학교 내 숙소 이용자들(M=2.00)이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고 있었음
- 그러나 운동 연수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수강한 경험은 10년 이상자(M=1.52)와 6-9년(M=1.60)에 비해 5년 이하 경력자들(M=1.8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음

〈표 3-40〉 합숙장소별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학교 내 숙소	52	1.67	.474
	외부 전용숙소	49	1.55	.503
	기타	9	1.67	.500
	합계	110	1.62	.488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학교 내 숙소	52	2.00	.000
	외부 전용숙소	49	1.98	.143
	기타	9	1.89	.333
	합계	110	1.98	.134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학교 내 숙소	52	1.77	.425
	외부 전용숙소	49	1.92	.277
	기타	9	1.56	.527
	합계	110	1.82	.387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학교 내 숙소	46	1.61	.493
	외부 전용숙소	48	1.94	.245
	기타	8	1.75	.463
	합계	102	1.77	.420

* p < .05 ** p < .01

〈표 3-41〉 운동 연수별 (성)폭력 해결방안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5년 이하	22	1.82	.395
	6-9년	55	1.60	.494
	10년 이상	33	1.52	.508
	합계	110	1.62	.488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5년 이하	22	2.00	.000
	6-9년	55	1.98	.135
	10년 이상	33	1.97	.174
	합계	110	1.98	.134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5년 이하	22	1.82	.395
	6-9년	55	1.78	.417
	10년 이상	33	1.88	.331
	합계	110	1.82	.387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5년 이하	17	1.71	.470
	6-9년	53	1.74	.445
	10년 이상	32	1.88	.336
	합계	102	1.77	.420

바)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

○ 다음은 폭력/성폭력 해결방안 항목의 마지막 변인(문항)으로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는 ‘도움이 된다’(63.0%)와 ‘매우 도움 된다’(13.0%)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음

- 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가’를 설문하여 본 결과, ‘선수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선수들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23.1%) ‘폭력·성폭력의 대처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19.8%)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해 많은 선수들에게 폭력 예방과 성교육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어떤 점이 부족했나’를 알아본 결과, ‘부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7.0%였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 진행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응답이 수수이나마 나타났고, ‘휴식시간에 진행하여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선수문화와 동떨어진 교육내용으로 인해 공감하기 어려웠다’ ‘교육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나타나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2〉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의 신체폭력 예방 도움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	-
도움되지 않는다	2	2.0
보통이다	22	22.0
도움된다	63	63.0
매우 도움된다	13	13.0
합계	100	100.0

〈표 3-43〉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의 도움 사례

구분	빈도	퍼센트
선수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	61	50.4
선수들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28	23.1
폭력·성폭력의 대처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24	19.8
지도자(감독, 코치)의 인식 및 태도가 달라졌다	4	3.3
도움되지 않았다	1	0.8
기타	3	2.5
합계	121	100.0

〈표 3-44〉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의 문제점

구분	빈도	퍼센트
휴식시간에 진행하여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3	4.1
선수문화와 동떨어진 교육내용으로 인해 공감하기 어려웠다	3	4.1
교육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	3	4.1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5.4
부족하지 않았다	57	77.0
기타(교육 진행해도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 등)	4	5.4
합계	74	100.0

- 다음은 이러한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를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는 운동종목과 운동연수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음
- 운동종목으로는 축구선수들(M=3.93)이 축구 외 선수들(M=3.73)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운동연수에 따라서는 5년 이하 운동한 선수들(M=3.55)에 비해 6-9년(M=3.94)과 10년 이상 운동한 선수들(M=3.96)이 폭력/성폭력 교육이나 인권교육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5).
-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성별로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10대들, 학교 내 숙소 용자보다는 외부 전용 숙소 합숙자들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표 3-45〉 성별 교육과 폭력 예방 도움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남자	86	3.91	.606	3.286#
	여자	14	3.64	.842	

〈표 3-46〉 연령별 교육과 폭력 예방 도움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구분	나이	N	평균	표준편차	T/F값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10대	47	3.94	.704	.247
	20대	53	3.81	.590	

〈표 3-47〉 운동 종목별 교육과 폭력 예방 도움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구분	운동종목	N	평균	표준편차	T/F값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축구	70	3.93	.547	11.730**
	축구 외	30	3.73	.828	

* p < .05 ** p < .01

〈표 3-48〉 합숙 장소별 교육과 폭력 예방 도움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학교 내 숙소	48	3.79	.798	1.100
	외부 전용숙소	44	3.98	.403	
	기타	8	3.75	.707	
	합계	100	3.87	.646	

〈표 3-49〉 운동 연수별 교육과 폭력 예방 도움 변인의 항목별 평균차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5년 이하	20	3.55	.759	3.216*
	6-9년	52	3.94	.669	
	10년 이상	28	3.96	.429	
	합계	100	3.87	.646	

* p < .05 ** p < .01

2) 팀 내 인간관계

- 다음은 팀 내 인간관계 항목으로, 여기에는 ‘지도자와 관계’ 변인과 ‘팀원 화합 정도’ 변인으로 나뉘어 분석되었음

가) 지도자와의 관계

- 먼저 ‘지도자와 관계’ 변인은 5점 척도에 평균 4.44로 높은 친밀도를 보여주고 있었음. 이러한 ‘지도자와 관계’ 변인이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음
- 그 결과, ‘지도자와 관계’ 변인은 운동종목, 합숙장소, 운동연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축구 외의 선수들(M=4.2294) 보다 축구 선수들(M=4.5342)이 지도자와 관계가 보다 돈독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숙장소에

따라서는 학교 내 숙소 이용자(M=4.3038) 보다는 외부 전용 숙소 합숙자(M=4.5796)들이 지도자와 관계가 돈독하였음

- 또한 운동경력이 오래된 선수들일수록 지도자와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5년 이하(M=4.1545)에 비해 10년 이상 운동경력을 가진 자들(M=4.5939)이 지도자와 친밀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음
-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p < .05)
- 그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지도자와의 관계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 10대에 비해 20대 선수들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표 3-50〉 성별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지도자와의 관계	남자	95	4.4568	.53924	2.671
	여자	15	4.3333	.70778	

〈표 3-51〉 연령별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나이	N	평균	표준편차	T/F값
지도자와관계	10대	53	4.4038	.52549	.089
	20대	57	4.4737	.59837	

〈표 3-52〉 운동 종목별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운동종목	N	평균	표준편차	T/F값
지도자와관계	축구	76	4.5342	.36717	39.127**
	축구 외	34	4.2294	.82113	

* p < .05 ** p < .01

〈표 3-53〉 합숙장소별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지도자와관계	학교내숙소	52	4.3038	.71892	3.158*
	외부전용숙소	49	4.5796	.29790	
	기타	9	4.4667	.50000	
	합계	110	4.4400	.56295	

* p < .05 ** p < .01

〈표 3-54〉 운동 연수별 지도자와의 관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지도자와관계	5년이하	22	4.1545	.79745	4.356*
	6-9년	55	4.4618	.48362	
	10년이상	33	4.5939	.43152	
	합계	110	4.4400	.56295	

* p < .05 ** p < .01

나) 팀원 화합 정도

- 다음은 ‘팀원 화합 정도’ 변인으로 전체적으로 팀원 화합 정도도 5점 척도에 4.178로 높은 화합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음
- 이러한 ‘팀원 화합 정도’를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팀원 화합 정도’는 성별, 운동종목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성별로는 남성(M=4.1747)에 비해 여성(M=4.1867)이 팀원 화합 정도가 높았으며,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축구선수들(M=4.1684) 보다는 축구 외 선수들(M=4.1941)이 팀원 화합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p < .05)
-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10대, 합숙장소별로는 외부 전용 숙소 이용자들 보다는 학교 내 숙소 합숙자들이 팀원간 화합정도가 다소 높았음
- 또한 운동 연수별로도 경력이 오래될수록 팀원간 화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5년 이하 선수들이 평균 4.0091임에 비해 10년 이상 선수들이 평균 4.2424임을 알 수 있음

〈표 3-55〉 성별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팀원화합정도	남자	95	4.1747	.56058	9.972**
	여자	15	4.1867	.93340	

* p < .05 ** p < .01

〈표 3-56〉 연령별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나이	N	평균	표준편차	T/F값
팀원화합정도	10대	53	4.2075	.56835	2.077
	20대	57	4.1474	.66604	

〈표 3-57〉 운동 종목별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운동종목	N	평균	표준편차	T/F값
팀원 화합 정도	축구	76	4.1684	.52870	7.562**
	축구 외	34	4.1941	.79313	

* $p < .05$ ** $p < .01$

〈표 3-58〉 합숙 장소별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팀원 화합 정도	학교내숙소	52	4.2500	.69041	1.883
	외부전용숙소	49	4.1633	.50112	
	기타	9	3.8222	.70317	
	합계	110	4.1764	.61881	

〈표 3-59〉 운동 연수별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팀원 화합 정도	5년이하	22	4.0091	.72105	1.046
	6-9년	55	4.2036	.60307	
	10년이상	33	4.2424	.56956	
	합계	110	4.1764	.61881	

3) 팀 생활 만족도

- 본 조사분석의 종속변인은 ‘팀 생활 만족도’임. 스포츠 폭력의 피해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책방안이 마련된 상태라면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폭력에 대한 피해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상태로 당연히 팀 생활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팀 생활 만족도’ 분석은 본 조사의 최종적인 고찰인 바, 조사대상자들의 ‘팀 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의 4.4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이러한 ‘팀 생활 만족도’가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연령과 합숙장소 그리고 운동연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20대 선수들(M=4.40)에 비해 10대 선수들(M=4.43)이 팀 생활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 내 숙소 이용자들(M=4.23) 보다 외부 전용 숙소 합숙자들(M=4.65)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운동연수별로는 경력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5년 이하 경력의 선수들(M=4.00)에 비해 6-9년(M=4.49), 10년 이상 경력의 운동선수들(M=4.58)이 팀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바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남(p < .05).]

- 그리고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 운동종목별로는 축구 외 선수들에 비해 축구 선수들이 팀 생활 만족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60〉 성별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귀하는 현재 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남자	95	4.48	.836	.010
	여자	15	4.00	.926	

〈표 3-61〉 연령별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나이	N	평균	표준편차	T/F값
귀하는 현재 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0대	53	4.43	.605	7.643**
	20대	57	4.40	1.050	

* p < .05 ** p < .01

〈표 3-62〉 운동 종목별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운동종목	N	평균	표준편차	T/F값
귀하는 현재 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축구	76	4.61	.767	1.902
	축구 외	34	4.00	.921	

〈표 3-63〉 합숙 장소별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귀하는 현재 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학교 내 숙소	52	4.23	.807	3.437*
	외부 전용숙소	49	4.65	.879	
	기타	9	4.22	.833	
	합계	110	4.42	.861	

* p < .05 ** p < .01

〈표 3-64〉 운동 연수별 팀 생활 만족도 변인의 평균차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귀하는 현재 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년 이하	22	4.00	.926	3.499*
	6-9년	55	4.49	.690	
	10년 이상	33	4.58	1.001	
	합계	110	4.42	.861	

- 다음은 이러한 ‘팀 생활 만족도’와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으며, 여기에 투입된 독립변인들 중 성별, 합숙장소, 운동종목은 남성, 학교 내 숙소, 축구를 중심으로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음

- 그 결과, ‘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 변인들이 나타났다는데, ‘팀 생활 만족도’는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 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Pr=.317), ‘지도자와 관계(Pr=.344),’, ‘팀원 화합 정도(Pr=.267),’ 성별(남성)(Pr=.194), 운동종목(축구)(Pr=.326), 운동연수(Pr=.263)와 정적(正的) 상관관계, 합숙장소(학교 내 숙소)와는 부적(否的)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음
- 곧 각종 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팀 생활 만족도는 높았고, 지도자와 관계가 돈독할수록, 팀원 간 화합정도가 친밀할수록 팀 생활 만족도 높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남자 운동선수일수록, 축구 종목 선수일수록, 운동경력이 오래될수록, 외부 전용 숙소의 합숙 선수일수록 팀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3-65〉 생활 만족도 변인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1.교육경험	1						
2.예방법인지	.173	1					
3.교육도움여부	-.094	.a	1				
4.신고기관인지	.066	.289**	.189	1			
5.신고기관이용	.191	-.076	.030	.443**	1		
6.지도자와 관계	.043	-.015	.166	.025	.003	1	
7.팀원화합	.067	-.049	.233*	.066	-.065	.578**	1
합숙장소(학교내)	.107	.129	-.117	-.120	-.360**	-.230*	.113
성별(남성)	-.094	-.054	.143	-.050	-.136	.076	-.007
운동종목(축구)	.001	.056	.139	-.060	-.069	.251**	-.019
나이	.018	.042	-.011	-.025	.262**	.176	-.049
운동경력	-.066	.003	.199*	.069	.111	.255**	.136
팀생활만족	.034	-.013	.317**	.148	.025	.344**	.267**

구분	합숙장소	성별	운동종목	나이	운동경력	8
합숙장소(학교내)	1					
성별(남성)	-.207*	1				
운동종목(축구)	-.431**	.537**	1			
나이	-.340**	-.338**	-.164	1		
운동경력	-.507**	.238*	.498**	-.030	1	
팀생활 만족	-.207*	.194*	.326**	-.135	.263**	1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분석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적 특성(성별, 연령, 합숙장소, 운동종목, 운동연수)과 본 조사의 설문에서 설정한 8개 변인, 곧 폭력/성폭력 해결방안을 위한 5개 변인인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성)폭력 신

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 그리고 팀 내 인간관계를 확인하는 2개 변인인 '지도자와 관계', '팀원 화합정도' 등 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종속변인인 '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음

- 분석 결과, 독립변인들의 '팀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465였다. 그리고 '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인들 중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닌 것들로 '(성)폭력예방교육이 폭력예방에 도움'(.304), '지도자와 관계'(.365), 연령(-.049), 운동종목(축구)(.558)이었음
- 곧 (성)폭력예방교육이 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지도자와의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축구종목의 선수일수록 팀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임

〈표 3-66〉 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통계량변화량				
					R 제곱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F 변화량
1	.682a	.465	.256	.692	.465	2.217	11	28	.044

〈표 3-67〉 팀 생활 만족도 관련 회귀분석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모형	11.684	11	1.062	2.217	.044b
	잔차	13.416	28	.479		
	합계	25.100	39			

〈표 3-68〉 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257	1.021		1.231	.222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026	.151	.015	.172	.864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있다	.209	.218	.099	.962	.339
	신고/상담기관 이용할 의향	.036	.213	.018	.170	.866
	(성)폭력 예방교육이 폭력에	.304	.118	.231	2.567	.012
	방에 도움					
	지도자와의 관계	.365	.168	.248	2.167	.033
	팀원 화합정도	.214	.150	.158	1.420	.159
	나이	-.049	.025	-.222	-1.974	.052
	운동경력	-.018	.037	-.057	-.500	.618
	합숙장소 더미	-.264	.227	-.159	-1.164	.248
	성별 더미	-.182	.266	-.073	-.684	.496
	운동종목 더미	.558	.234	.300	2.384	.019

a. 종속변수: 귀하는 현재 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4. 분석결과의 요약 및 논의

- 스포츠 폭력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엘리트 스포츠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스포츠과학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향상, 국민의 행복 실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 체육전문인력 양성과 스포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스포츠 폭력의 문제는 꼭 잡고 넘어가야만 되는 문제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임
-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수들의 팀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은 크게 폭력/성폭력 해결방안과 팀 내 인간관계 그리고 팀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항목들임
- 이 가운데 (성)폭력 해결방안은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그리고 (성)폭력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팀 내 인간관계는 지도자와의 관계와 팀 내 화합정도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되었음
- 그리고 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은 물론 합숙장소, 운동종목, 운동연수에 대한 항목들이 추가로 조사되었음

가. 폭력 · 성폭력 해결방안

- 우선 전체적으로 빈도분석을 보면,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98.2%가 인지하고 있었음
-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 인지여부’도 81.8%로 높은 편이었고, 이에 비해 적지 않은 비율이긴 하지만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경험’이 6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그리고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의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 변인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87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폭력/성폭력 해결방안을 구성하는 나머지 4개 변인 중에서는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 수강 경험’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신고/상담기관 이용 의향’,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 인지 여부’의 순으로 나타남
- 변인(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 수강’은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 ‘신고/상담기관 이용 의향’과 정적(正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

고,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는 '폭력예방에 도움', '신고/상담기관 인지'와 정적 상관성을 보여주었음

- 그리고 '신고/상담기관 인지'와 '이용 의향'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

-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적으로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경험'이 6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경험'의 횟수를 확인해본 결과,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가 7.0%였고 그 외는 1~20회의 분포를 보였으며 2회가 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회(18.6%) 1회(11.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자의 교육이수 경험 평균 횟수는 6.16회(SD=15.098)였으며,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육경험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워 실질적으로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가 사회인구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한 결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의 경우는 남성(60.0%)에 비해 여성들(73.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합숙장소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외부전용 숙소(55.1%)에 합숙하는 경우보다 학교 내 숙소에 합숙하는 경우(67.3%)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음
- 연령별로는 20대(56.1%)에 비해 오히려 10대(67.9%)들이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많았고, 운동종목별로는 축구나 그 외의 종목에서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
- 운동을 한 연수별로 살펴보면, 이 역시 10년 이상 운동을 오래한 선수들(61.8%)이나 6-9년 정도 선수들(60.0%)보다도 오히려 5년 이하로 운동한 선수들(81.8%)이 훨씬 교육을 수강한 경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

-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98.2%가 알고 있었음
-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41.1%가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은 '학교 또는 소속팀에서 전문 강사(혹은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18.7%) '학교에

서 동영상 감상을 통해'(17.9%) '팀 지도자의 교육을 통해'(11.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가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적 특성은 없었음
- 다만 성별로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합숙장소별로는 학교 밖의 숙소에 합숙하는 경우보다는 학교 내 숙소를 이용하는 선수들이, 연령별로는 10대보다 20대들이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을 보다 많이 알고 있었음
- 또한 운동 연수별로는 오래 운동한 선수들보다는 5년 이하의 경우가 폭력,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81.8%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합숙장소에 따라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음
- 특히, 학교 내 숙소 이용자(76.9%)보다는 외부 전용 숙소를 이용하는 선수들(91.8%)이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의 사회인구적 특성들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 10대 보다 20대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인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많았고, 축구선수들보다는 축구 외의 선수들, 운동경력이 6~9년에 비해 5년 이하와 10년 이상 운동한 선수들이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4)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은 71.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한 결과, 다수가 응답을 기피하고 있었지만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도 나타났음
-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이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 확인해 본 결과, 합숙장소와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우선 합숙장소에 따라 보면, 학교 내 숙소를 이용하는 선수들(60.9%)보다 외부 전용 숙소를 이용하는 선수들(93.8%)이 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많다고 응답했고, 연령별로는 10대들(67.3%)에 비해 20대(86.8%)의 선수들이 이용할 의향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었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성별로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 운동종목별로는 축구보다는 축구 외의 선수들이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운동연수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의향이 많아 5년 이하가 70.6%인데 비해 10년 이상 선수들이 87.5%로 나타나고 있었음
 - 그리고 앞서 정리한 4개 변인들의 평균차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 수강 경험’과 ‘신고/상담기관 이용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를 보여주고 있었음
 - 구체적으로 먼저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수강 경험이 많다고 응답했고,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도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이 의향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었음
 - 연령별로는 4개 변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는 20대 보다는 10대들이 수강경험이 많았고,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가’는 10대에 비해 20대가 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었음
 - 그리고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는가’는 10대 보다는 20대,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도 10대에 비해 20대가 그럴 의향이 많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음
 - 한편, 합숙장소에 따라서는 ‘신고/상담기관 인지 여부’와 ‘신고/상담기관 이용 의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는가’는 학교 내 숙소 이용자 보다 외부 전용 숙소 이용자,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도 학교 내 숙소에 비해 외부 전용 숙소 합숙자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음
 - 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외부 전용 숙소보다는 학교 내 숙소, 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방법 인지

정도는 학교 내 숙소 이용자들이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고 있었음

- 그러나 운동연수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수강한 경험은 10년 이상자와 6-9년에 비해 5년 이하 경력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5)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

- 다음은 폭력/성폭력 해결방안 항목의 마지막 변인(문항)으로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는 ‘도움이 된다’(63.0%)와 ‘매우 도움 된다’(13.0%)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음
- 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가’를 설문하여 본 결과, ‘선수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선수들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폭력·성폭력의 대처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해 많은 선수들에게 폭력 예방과 성교육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어떤 점이 부족했나’를 알아본 결과, ‘부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7.0%였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 진행해도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는 응답이 소수이나 나타났고, ‘휴식시간에 진행하여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선수문화와 동떨어진 교육내용으로 인해 공감하기 어려웠다’ ‘교육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나타나 창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은 이러한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를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본 결과,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는 운동종목과 운동연수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음
- 운동종목으로는 축구선수들이 축구 외 선수들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운동연수에 따라서는 5년 이하 운동한 선수들에 비해 6-9년과 10년 이상 운동한 선수들이 폭력/성폭력 교육이나 인권교육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었음
-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성별로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10대들, 학교 내 숙소 이용자보다는 외부 전용 숙소 합숙자들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나. 팀 내 인간관계

- 팀 내 인간관계는 ‘지도자와의 관계’와 ‘팀 내 화합정도’의 2개 변인으로 나뉘어 분석되었음

1) 지도자와의 관계

- ‘지도자와 관계’ 변인은 5점 척도에 평균 4.44로 높은 친밀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도자와 관계’ 변인이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결과, ‘지도자와 관계’ 변인은 운동종목, 합숙장소, 운동연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축구 외의 선수들 보다 축구 선수들이 지도자와 관계가 보다 돈독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숙장소에 따라서는 학교 내 숙소 이용자 보다는 외부 전용 숙소 합숙자들이 지도자와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운동경력이 오래된 선수들일수록 지도자와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5년 이하에 비해 10년 이상 운동경력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와 친밀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음
- 그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지도자와의 관계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 10대에 비해 20대 선수들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2) 팀원 화합 정도

- ‘팀원 화합 정도’ 변인은 전체적으로 5점 척도에 4.178로 높은 화합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팀원 화합 정도’를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본 결과, ‘팀원 화합 정도’는 성별, 운동종목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팀원 화합 정도가 높았으며,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축구선수들 보다는 축구 외 선수들이 팀원 화합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10대, 합숙장소 별로는 외부 전용 숙소 이용자들 보다는 학교 내 숙소 합숙자들이 팀원 간 화합정도가 다소 높았음
- 또한 운동연수별로도 경력이 오래될수록 팀원 간 화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5년 이하 선수들이 평균 4.0091임에 비해 10년 이상 선수들이 평균 4.2424임을 알 수 있음

다. 팀 생활 만족도

- 본 조사 분석의 종속변인은 ‘팀 생활 만족도’로 스포츠 폭력의 피해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책방안이 마련된 상태라면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폭력에 대한 피해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상태로 의당 팀 생활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팀 생활 만족도’ 분석은 본 조사의 최종적인 고찰임. 조사대상자들의 ‘팀 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의 4.415로 높은 편이었음
- 구체적으로 먼저 이러한 ‘팀 생활 만족도’가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본 결과, 연령과 합숙장소 그리고 운동연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특히, 20대 선수들에 비해 10대 선수들이 팀 생활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 내 숙소 이용자들 보다 외부 전용 숙소 합숙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운동연수별로는 경력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5년 이하 경력의 선수들에 비해 6-9년, 10년 이상 경력의 운동선수들이 팀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 운동종목별로는 축구 외 선수들에 비해 축구 선수들이 팀 생활 만족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팀 생활 만족도’와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 변인들이 나타났는데, ‘팀 생활 만족도’는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지도자와 관계’, ‘팀원 화합 정도’, 성별(남성), 운동종목(축구), 운동연수와 정적(正的)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합숙장소(학교 내 숙소)와 부적(否的)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각종 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팀 생활 만족도는 높았고, 지도자와 관계가 돈독할수록, 팀원 간 화합정도가 친밀할수록 팀 생활 만족도 높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 또한 남자 운동선수일수록, 축구 종목 선수일수록, 운동경력이 오래될수록, 외부 전용 숙소의 합숙 선수일수록 팀 생활 만족도가 높았음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분석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적 특성(성별, 연령, 합숙장소, 운동종목, 운동연수)과 본 조사의 설문에서 설정한 8개 변인, 곧 폭력/성폭력 해결방안을 위한 5개 변인인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여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인지 여부’,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인지 여부’, ‘(성)폭력 신

고 및 상담기관 이용 의향', '교육 등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 여부', 그리고 팀 내 인간관계를 확인하는 2개 변인인 '지도자와 관계', '팀원 화합정도' 등 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종속변인인 '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음

- 분석 결과, 독립변인들의 '팀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465임. 그리고 '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인들 중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닌 것들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폭력예방에 도움', '지도자와 관계', 연령, 운동종목(축구)이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곧 (성)폭력 예방교육이 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지도자와의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축구종목의 선수일수록 팀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라. 분석결과에의 논의

- 스포츠 폭력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모색하는 일은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향상, 국민의 행복 실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 체육전문인력 양성과 스포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스포츠 폭력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수들의 팀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시도한 결과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 먼저, 앞서 보았듯이 전체적으로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경험'이 61.8%로 높은 편은 아니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경험'의 횟수를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가 7.0%였고 그 외는 1~20회의 분포를 보였으며 2회가 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회(18.6%) 1회(11.6%)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이수 경험 평균 횟수는 6.16회였다. 전체적으로 교육 수강 경험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 따라서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질적, 양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여성들, 학교 내 숙소에 합숙하는 선수들, 10대들, 5년 이하로 운동한 선수들이 훨씬 교육을 수강한 경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은 특정 층에 편중되지 않고 남성들, 교외 전용 숙소의 합숙 선수들, 20대들도 동일한 관심을 갖고 전체 스포츠인들이 모두 수강하고 체득해야만 되는 내용임이 분명함
- 특히 운동경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교육 수강의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만 될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모든 선수 및 스포츠인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왜 폭력/성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인지하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과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의 필요성까지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폭력/성폭력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한편, 본 조사연구에서는 폭력/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98.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의 41.1%가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교육을 통해’ 예방법과 대처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학교 또는 소속팀에서 전문 강사(혹은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좀 더 관련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 그리고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를 확인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6%였음
- 또한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가를 설문한 결과 ‘선수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선수들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폭력·성폭력의 대처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해, 많은 선수들에게 폭력 예방과 성교육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런데도 현재 이루어지는 폭력예방 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임
- 특히, ‘교육을 진행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나 ‘휴식 시간에 진행하여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선수문화와 동떨어진 교육내용으로 인해 공감하기 어려웠다’, ‘교육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개선사항으로 반드시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81.8%가 폭력/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기관이나 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은 71.8%였음
-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다수가 응답을 기피하고 있었지만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들이 나타난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 참조해야 할 사항들임
-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스포츠 폭력의 피해가 없는 상태, 그리고 피해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합리적 대책방안이 마련된 상태를 조성해야 하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폭력에 대한 피해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은 팀 생활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것임

-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인들 중에는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이 폭력예방에 도움’, ‘지도자와 관계’, 연령, 운동종목(축구)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 이는 곧 (성)폭력 예방교육이 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지도자와의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팀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지적을 고려한다면 폭력/성폭력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기의 예방교육과 더불어 팀 내의 인간관계 곧 지도자와 선수 및 선수들 사이의 화목한 인간관계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스포츠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임

IV. 서울시의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1.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및 보완

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확대

1)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최근의 개정 내용

-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활동과 관련된 일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최근 3차례의 개정을 통해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구축함
-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난 2020년 발생한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계가 그동안 추구해온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우선주의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당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법률 내용 중 '체육을 통해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맹목적 희생에 의한 국위 선양이라는 목표가 모든 스포츠 활동의 우선적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소위 '즐기는 스포츠'가 우선되어 한다는 풍토가 조성되었음
- 실제로 현재 동 법 제1조(목적)에서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 및 자격제한이 대폭 강화된 바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의 최근 두 번째 개정은 앞선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철인3종 경기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2021년 2월 19일 이루어짐
- 2021년 2월 19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사항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기능 강화,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훈령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등의 대안이 마련된 바 있음
- 그리고 이후 추가적 제도개선을 위해 2021년 6월 9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에서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비위행위와 유죄확정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그리고 학교, 체육단체 등의 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년 마다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의 장에게 선수 인권보호 조치를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숙소 내 사생활의 자유와 입소여부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였음

〈표 4-1〉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최근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	주요 내용
1차 (2020년 8월 5일 시행)	· 법 제1조의 ‘체육을 통해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 삭제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 및 자격제한 강화
2차 (2021년 2월 19일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기능 강화 ·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3차 (2021년 6월 9일 시행)	· 인권침해나 비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공개 · 학교, 체육단체 등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2년 마다 의무교육 실시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및 합숙소 내 사생활의 자유와 입소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권 보장

2)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향후 주요 개정방향

- 스포츠 폭력을 예방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국민체육진흥법」의 향후 개정방향은 소위 ‘폭력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의 구체화와 엄격화’로 요약될 수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무리 국민체력 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연대감을 강조하는 일종의 체육진흥법률이라 하더라도 이 법 제2조에서는 체육계 인권보호 역시 동시에 적시하고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장치 역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스포츠 폭력과 인권보호를 위한 이 법률의 구체적 개정방안은 살펴보면, 첫째, 이 법 제2조(정의)에서 “스포츠 비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포츠 폭력과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규제 혹은 처벌해야 하는 (성)폭력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것임
- 둘째, 법 제10조의 4(합숙소의 관리)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임의조항을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적 조항으로 개정하여 반드시 개인의 선택적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이 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서는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소가 된 피고인의 경우 범죄행위가 상당 부분 입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하고 기소 이후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공판과정을 통해 위법적 행위가 명확히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죄질과 가해사실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와 같이 스포츠 폭력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넷째, 그동안 대부분의 폭력예방 교육이 성폭력 교육에 집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일반적 폭력피해와 성폭력 피해는 적용 법률은 물론 지원 및 보호, 사건 처리 절차와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그러므로 동 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의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있어 성폭력과 폭력을 엄격히 분리하여 양자에 대한 예방교육이 별도로 실시되도록 해야 함
 - 또한 법률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에 의해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이루어지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폭력예방교육으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아울러 동 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있어서도 성폭력과 폭력 예방교육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 등 세부 사항을 적시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4 역시 개정함으로써 일반적 폭력피해와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섯째, 동 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1항의 내용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현재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지

원'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도록 하여 스포츠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보호와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형사절차에 대한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4-2〉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 개정방향

조항	주요 내용
제2조	· 스포츠 폭력과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개념 규정 · 규제 및 처벌해야 하는 (성)폭력 행위의 범위 구체화
제10조의 4	·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필요(의무)적 조항으로 개정
제11조의 5	· 폭력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임
제11조 제3항, 제11조의6, 제18조의11	· 성폭력과 폭력을 엄격히 분리하여 양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 ·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이루어지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폭력예방교육으로 분리하여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4 역시 개정함으로써 일반적 폭력 피해와 성폭력의 등 예방 및 대처 방안,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 실시
법 제22조	·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보호와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형사절차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 지원

나. 「스포츠기본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지난 2020년 이루어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이후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2021년 8월 10일에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재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은 법률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스포츠 진흥에 치우쳐 정작 운동선수의 인권과 같이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함(고기복, 2021)
- 실제로 이 법은 입법화 과정에서 스포츠정책 수립 및 집행 사항,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 스포츠재정과 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재원 확보, 환경보호, 스포츠 가치 보급, 분쟁조정 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부 폭력, 학교 스포츠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 당시 스포츠 분야 전반에 걸쳐 발

생했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스포츠에 관한 권리 보장을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탄생한 법률임

- 하지만, 정작 이 법률에는 제2조에서만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관련되는 매우 간략히 사항이 언급되고 있을 뿐 나머지 조항 전체에 걸쳐서는 인권, 기본권,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이제라도 「스포츠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인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적극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자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와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제9조에 적시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28조를 신설하여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시책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통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운동선수·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법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관련 실태조사,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스포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제9조의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통해 스포츠 폭력, 가혹행위 등 스포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기도 스포츠인권 센터가 신고, 상담, 사전예방, 실태조사, 그리고 교육, 홍보 등의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4장(체육계 인권) 제23조에서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수립 방향만 적시하고 있을 뿐 경기도와 같은 구체적 폭력, 성폭력 피해예방 노력을 명시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24조(체육인 인권 교육)에서 “시장은 체육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의 내용, 대상,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결여되고 있음
- 또한 제25조(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역시 “시장이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사항을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제26조(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에서도 시장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적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시책추진 방법과 점검방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제27조(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서는 시장이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역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가짐
-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외에 별도의 가칭 「서울특별시 스포츠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 주도로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다양한 인

권보호 장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행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역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먼저 제23조에 폭력, 성폭력 피해예방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하고, 24조의 개정을 통해서도 폭력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내용, 대상,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적시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제25조의 개정을 통해서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26조 개정을 통해서도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제27조에서는 시장 주관으로 매년 전 서울시 차원에서 폭력과 성폭력,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임

라. 가칭 「서울특별시 스포츠 인권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한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의 한계 보완

- 「스포츠 인권 헌장」은 체육정책 관계자, 지도자, 운동선수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스포츠의 참의미와 신체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권과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방향을 담고 있음
- 또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조직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선수, 지도자, 학부모 나아가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참고하고 숙지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스포츠 교육과 훈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노력과 더불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9)
- 그런데, 일선 체육계 현장에서는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으며, 이미 10여 년 전 채택된 현행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때문에 실제 신체폭력·성폭력 등 잠재적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현직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도 각종 피해발생 시 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나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4명 중 1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김대희 외 8인, 2021)
-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조례제정과 스포츠 인권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선 체육 현장에 보급, 적용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충청남도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비리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운동 환경조성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전 구성원들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스포츠 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제8조에서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노력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체육회 역시 지난 2021년 「충청남도 체육회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스포츠 참여권과 동시에 스포츠 활동시의 인권보장을 천명하고 있음(충청남도 체육회, https://www.cnsports.or.kr/home/content.do?menu_cd=000073, 2022년 5월 23일 검색)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외에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등으로 확대되어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동일한 명칭의 조례로 제정된 바 있음
- 또한 대전광역시는 「체육인 스포츠 인권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포츠 인권조례」, 인천광역시는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로 명칭은 상하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시 등 일부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일선 현장에서 정부 차원의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에서도 가칭 「서울특별시 스포츠 인권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일선 체육현장에서 유명무실화된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이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시 전 체육인들의 신뢰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가.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대행, 정책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 법률과 시행령에는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스포츠권 보장과 포괄적인 심의·의결 사항과 운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력예방 혹은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음
- 때문에 과연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가 일선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를 인자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있는 선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4개부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폭력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사안들을 심의, 의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사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
- 즉, 스포츠를 위해, 그리고 스포츠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스포츠의 수요자와 스포츠계 구성원 중심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범정부적인 논의라는 상징성만을 내세워 부처 장관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의문임
- 물론 국가 스포츠 정책 위원회 산하에 차관회의가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 차관회의 역시 일선 현장의 체육단체나 민간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스포츠 폭력에 관한 논의 자체가 현실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그러므로 「스포츠기본법」 제9조를 개정하여 국가스포츠 정책 위원회의 역할에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개

정하여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 그리고 14개 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하위 분과를 두도록 하고, 하위 분과 중 하나로 가칭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분과에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실무자들, 그리고 외부 체육단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이 분과를 통해 관계 기관의 실무자들과 민간 위원들이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나.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 및 위상 확대

- 고(故) 최속현 선수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한 폭력과 성폭력 사례는 피해자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체육계 전반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과 파장을 몰고온 바 있음
-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스포츠 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도 하였고, 스포츠비리신고센터나 클린스포츠센터, 그리고 스포츠인권센터 등을 운영하여 스포츠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지를 보인 바 있음
- 또한 아래의 <표 4-3>과 같은 논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한 바 있음

<표 4-3>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요 논의과정

구분	개선대책	주요내용
1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 (2008. 2. 18.)	·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조치 · 여성 지도자 할당제 도입 · 체육계 통합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2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2012. 2. 21.)	·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승부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 체육단체 비리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
3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2013. 1. 15.)	· 스포츠인권익센터 지원대상 확대(장애인·프로선수) · 체육단체별 징계양정기준 마련, 무관용 원칙 적용 · 지도자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징계내역 등) 및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
4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2013. 10. 7.)	· 종목별 경기단체 사유화 방지를 위해 임원의 임기·자격 제한 · 비리 경기단체 및 임원 퇴출제도 신설 · 공정체육센터(대한체육회) 설치(비리체포 상시 조사)
5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설치	· 스포츠 4대악(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표 4-3〉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요 논의과정

	및 운영 계획 (2014. 1. 22.)	사유화) 사례 제보접수 및 관련조치 총괄기구 설치
6	체육계 성폭력 방지 개선 방안 (2014. 4. 28.)	·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스포츠인권익센터의 권역별 지역 센터 설치 · 지도자 등록 취소제 추진
7	선수폭력 방지대책 (2016. 1. 8.)	· 지도자의 (성)폭력 관련 징계 강화(자격정지 1년 이상)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 상실요건 강화 · 징계절차 간소화(3심제→2심제)
8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2016. 3. 15.)	· 경기기록 현장 확인, 온라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시스템 도입 · 입학비리 연루자 퇴출을 위한 '윈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통보 제도 도입
9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2019. 1. 25.)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스포츠 비리전담 독립기관) ·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 법안 마련 ·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여성관리자 배치
10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 권고 (2019. 4. 19.)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별 검토 및 공동 협의 · 스포츠 분야의 인권 및 성평등 향상 활동 추진 기구 설립 · 법적근거 마련, 인력 및 예산 확보 추진
1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020. 8. 5; 2021. 2. 19; 2021. 6. 9)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 및 자격제한 강화 ·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인권침해나 비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공개 · 학교, 체육단체 등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2년 마다의 의무교육 실시 등
12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2021. 4. 21)	· CCTV 설치 확대, 학기별 인권교육 의무화, 피해자 심리치료 등
13	「스포츠기본법」 제정 (2021. 8. 10)	·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운영 · 스포츠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년 11월 13일자 참조.

-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하였고, 결국 지난 2020년 8월 18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립에 까지 이르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인의 형태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통해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승부 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체육 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스포츠 윤리센터는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체육계 전반에 걸친 비위행위와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윤리센터가 근본적인 도입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 스포츠 윤리센터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동 법 제18조 제5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등의 조사에 있어 현재 스포츠 윤리센터에는 조사에 대한 권한은 부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사건 조사 시 피신고인이 진술이나 조사를 거부하여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 실제로 동 법 제18조 제5항에서는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강제적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피신고인의 불성실한 조사태도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때문에 엄격한 위계질서와 계층제에 기반하여 그 어느 조직 보다 폐쇄적 조직문화

를 가진 체육계에서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그러므로 현재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통해 일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수 있고, 조사를 통해 징계요구만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함
- 특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강화된 조사 권한을 보유함과 동시에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남기연·유소미, 2020)

2) 징계권한의 강화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9항에 의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게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처분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적 내용은 결국 스포츠 윤리센터에는 징계요청 권한만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즉, 스포츠 윤리센터가 조사를 통해 아무리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자체적인 징계처분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결국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체육계 구성원에 대한 징계는 각 시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임. 때문에 징계양정기준 하한보다 낮게 징계처분 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처분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 윤리센터가 직접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반 권한을 부여하거나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각 시도체육회가 의결사항을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인력 및 예산 등 지원 확대

- 황지태(2021) 등에 의하면, 스포츠 폭력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 중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용한 비율이 13.0%에 그친 반면에 대한체육회(25.9%)와 소속 기

관(16.1%)을 통해 신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함

- 이는 현재 스포츠 윤리센터가 도입 취지와 달리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있는 결과임
-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스포츠 윤리센터 내부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상담공간, 예산 등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체육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윤리교육 수강 대상자는 40만 명에 이르는 반면 센터 내 담당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처럼 심각한 인력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 그러므로 스포츠 윤리센터가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을 억제하는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관련 경험이 있는 경력직 조사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고 필수 예산 및 기타 자원지급의 확대를 통해 부족한 상담실과 조사실 공간을 증설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 개선 노력이 요구됨

다. 지도자 및 폭력 선수에 대한 제재 강화

1) 관련 지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5항(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는 체육 지도자 중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 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 그런데, 금고 이상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및 집행유예, 벌금형의 확정은 정식기소(구공판)과 약식기소(구약식)를 불문하고 모두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어 형벌이 선고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경력을 가진 지도자에게 설사 20년 혹은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재차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할 것임
- 특히,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타 범죄 유형 보다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강력범죄의 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영구 자격박탈이 또 다른 피해의 억제를 위해서도 당연히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됨

2) 관련 선수에 대한 제재 강화

- 현재 체육계에서는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가해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먼저, 프로 스포츠의 경우 프로 스포츠 단체를 통해 신인 프로선수 선발 시 서약서 (거짓 작성 시 제재)와 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음
- 또한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는 학교폭력 징계 시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각 종목단체에서는 국가대표 선발 시 징계이력 확인 및 학폭위 심의 이력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각 실업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와 「직장운동 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에 따라 팀 내 신인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한 후 반영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도 대입 특기자 전형 시 고등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처럼 현재 체육계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24일 발표된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프로와 아마추어, 학원 스포츠를 불문하고 폭력과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제재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본인 인정 등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에 대하여 제반 상황과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각 구단이나 협회 등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가해선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 그 행위에 걸맞은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수에 대한 제재와 처벌 내용 역시 명확히 적시하여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한편, 현재 대한체육회는 폭력이나 성폭력 가해행위를 저지른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4-4>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및 처분유형에 따라 대회 참가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아무리 학생선수라 하더라도 퇴학 시에만 선수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뿐 대부분 1년 이하의 단기간 동안의 대회 참가 제한만 받고 있어 이 역시 지나치게 경미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폭력의 수위가 매우 높을 경우 이루어지는 8호 전학 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의 조치들이 6개월 미만의 대회 참가 제안으로 규정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대회참여 제한 조치가 필요함

〈표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가해학생 대회 참가 제한 규정 내용

기간	조치별 내용
3개월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6개월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12개월	· 8호(전학)
영구	· 9호(퇴학),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 시 선수자격 박탈

라. 합숙훈련의 최소화와 폭력 예방장치 설치 확대

- 지난 1972년 대학 입시에 체육특기자 제도가 도입되어 학교 운동부에 합숙 훈련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합숙 훈련은 우리나라의 국제경기력 향상과 그에 따른 수많은 상과 창출로 스포츠 부흥을 이끌기도 했으나 그 이면에는 스포츠 폭력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한 바 있음
- 실제로 이용식(2012), 정도희(2019), 이규호 외 3인(2021) 등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은 그들의 폭력피해와 성폭력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함
-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합숙 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 폭력 피해의 발생률이 약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국가인권위원회, 2019)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2019년부터 초등학교 운동부 기숙사는 폐지,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는 감축을 유도하는 가운데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며, 고등학교는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해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진행 중임
- 또한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도 남성 종목뿐만 아니라 여자배구, 여자농구 등 다수의 여성 종목에서도 여전히 합숙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체육계 일각에서는 합숙훈련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합숙훈련을 억제하기 보다는 합숙훈련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긍정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통상적으로 정식경기 및 훈련 후 합숙을 통해 이루어지던 감독, 코치, 선수단 회의나 경기 분석, 그리고 선수 개인에 대한 상담 등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임

- 또한 부득이 하게 합숙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합숙훈련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 각 경기단체별 협회는 물론 고교 및 대학 등 학교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내부 규정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계자에 의한 엄격한 감시체계가 가동되도록 하고 선배가 아닌 동급생이나 같은 연령대 동료가 2인 1실로 합숙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도록 해야 함
- 그리고 대부분의 폭력행위가 은밀한 비공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미 도입하고 있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가 사각지대 없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규정을 위한 지도자나 선수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 하도록 해야 함

마.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억제 대책 강화

- 지난 2021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해 징역 13년이 선고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성범죄 혐의와 무관한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 파문이 일어난 바 있음(여성신문, 2021년 10월 18일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60>)
-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 입장에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이처럼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인하여 경험하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체육계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임(김일우, 2022)
- 특히, 엄격한 위계적, 폐쇄적 조직구조를 가진 체육계의 경우 피해자들이 인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스스로 은폐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러므로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 진행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변호인을 조력 시스템을 구축 하고, 익명 상담 및 신고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 심리상담 분야의 자체 전문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외부의 각종 성폭력 관련 상담센터나 지원센터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특히, 각 체육단체는 자체적인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관계 담당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직무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 구성원에게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명확히 주시시켜야 할 것임
- 아울러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1차적 성폭력 피해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도 해당 체육단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체육단체에 대한 긴급 성폭력 집중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임

3. 체육계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 확대

가. 체육계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 매년 10월 15일은 ‘체육의 날’로서 국민의 체육에 대한 의식을 북돋우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정한 대한민국의 기념일임
- 그리고 또 한편으로 10월 15일은 스포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정한 ‘스포츠 인권의 날’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체육계 전체의 의지가 반영된 날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스포츠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계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권 의식 함양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즉, 아무리 법,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더라도 결국 스포츠 폭력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건, 사고가 터진 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임
- 그러므로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육계 구성원 전반에 걸쳐 올바른 인권의식과 윤리 의식이 함양되어야 함
- 특히,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조속히 무너뜨려야 하며,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방식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대한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의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인권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대한민국 체육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수직적 복종 문화의 관행을 탈피하도록 하고 성적 지상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체육계 전반의 자정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나. 스포츠계의 위계적 권력구조와 폐쇄성 극복

- 스포츠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체육계의 위계적 권력 구조와 폐쇄성으로 인해 각종 피해결과가 은밀히 감추어지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 폭력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행위는 지도

- 자 또는 선배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맹목적 복종관계를 형성시키고 엄격한 상하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임
- 또한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적 관행들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과거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피해자가 이후에는 가해자가 되는 소위 ‘폭력의 대물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더욱 중요한 점은 다양한 폭력행위의 피해자들이 체육계 전반에서 은밀하게 형성되어 지속되고 있는 지도자 또는 선배 그룹의 소위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의해 지속적으로 은폐되고 사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실제로 과거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2019년 1월 심석희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스포츠 ‘미투’사건 등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기 까지 선수에 대한 상당 기간의 조직적인 압력과 은폐시도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기도 함
 - 그런데, 이와 같이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위계적 권력구조와 폐쇄적 조직문화는 스포츠 폭력의 원인이 됨은 물론 폭력 피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기제로 작용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형성케 하고, 이는 결국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사실을 감추거나 심지어 극단적 선택의 요인으로도 작용함
 - 그러므로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체육계 전반의 부정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의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바 특히,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의 정기적 피해조사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여 피해사실이 은폐 없이 조기에 적발하고, 이를 통해 엄정한 민·형사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교육부가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 학교 운동부 소속이거나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식(한겨레 신문, 2021년 7월 25일자 참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4986.html>)이 직장 운동부와 대학 운동부를 포함한 전체 운동선수 대상 피해조사로 확대되어야 함
 -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조사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 설문조사 등의 양적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조사도 병행하여 그들의 보다 구체적인 진술과 의사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엄격한 처벌을 통한 근본적 관행 개선

- 지난 2020년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만5425

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긴급히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밝혀진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 등 총 310명의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체육지도자 16명을 제외한 학교 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8.2%)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인 33명(54.1%)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해 학생 중 특정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233명으로 이들에 대한 조치는 1호(피해학생 서면사과) 20명, 2호(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1명, 3호(학교에서의 봉사) 4명,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명, 8호(전학) 4명, 조치 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해 학생 역시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헤럴드경제, 2021년 10월 20일자 참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20000854>)
- 그런데, 이와 같은 경미한 처벌관행은 자칫 체육계 구성원들에게 폭력에 대한 용인과 수용성을 확대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그러므로 범죄학적 관점에서 소위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신속성을 통해 스포츠 폭력을 저지른 가해를 엄단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구성원 전체가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함(박미량·박경래, 2012)
- 특히,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 할 수 있는 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경우 엄격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도를 확립하여 가해 행위시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영원히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정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형성된 체육계 전체에 대한 불신의 풍토를 개선해야 할 것임

라.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故 최속현 선수 사망사건 이후 일명 '최속현법', 즉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통해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된 바 있음
-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에서는 인권교육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

고 있으며,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도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시행령 제8조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 즉, 동 시행령에서는 체육지도자의 기술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항만 적시하고 있을 뿐 체육지도자의 자질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인권의식 함양 교육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으로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이 250시간 이상,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은 120시간 이상,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은 90시간 이상,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은 200시간 이상, 기타 특별 연수과정은 40시간 이상으로 연수시간을 정하고 있음
-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체육계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이를 연수과정에 포함을 시키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교육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실제로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은 선수, 학부모,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시간이 매년 1시간 이상에 불과하고, 교육방법 역시 ‘스포츠 윤리런’사이트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강의를 수강한 후 이수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런, <https://edu.k-sec.or.kr/home/kor/education/application/index.do?menuPos=2&searchValue7=C>, 2022년 6월 5일 검색)
- 따라서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의무 인권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이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선수와 부모, 심판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내실화를 위해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교육을 담당할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위해 연도

별 이수증명이 아닌 체육계 활동 전체에 걸쳐 교육이수 경력이 나타날 수 있는 ‘평생 이수 증명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임(고기복, 2021)

- 아울러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한체육회와의 협업을 통해 소속 지역의 학교 및 직장 운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초등학교 운동선수부터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체육활동 대해서도 주기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고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폭력 및 인권침해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육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폭력행위가 더 이상 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지도자와 선수, 심판,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에게 인권·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V. 결 론

-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 문제점에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최적의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해야 하지만, 폐쇄적인 훈련 환경과 엄격한 상명하복 등의 관습에 의한 다양한 폭력피해에 노출되고 실정이며, 피해 이후에도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학습권 침해, 선배와 지도자의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대부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년 9월 2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총 129건(인권침해 44, 비리 85)의 신고를 접수한 결과를 살펴보면,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폭력이 24건(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성폭력 5건(11%), 기타 15건(34%)으로 나타나는 등 스포츠 폭력은 스포츠계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성에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체육회에 접수된 80건의 폭력·성폭력 사건 징계 수위를 분석한 결과, 가장 강한 징계인 '영구제명'을 내린 경우는 6건밖에 되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스포츠 폭력의 발생 원인과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함과 동시에 정부는 물론 서울시의 근절 노력과 그 한계에 따른 한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 모색하고자 하였음
- 특히,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는 물론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인식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였음
- 주요한 실증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양적 연구인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선수생활 기간 동안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61.8%로 나타나는 가운데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도 7.0%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관련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해, 많은 선수들에게 폭력 예방과 성교육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교육을 진행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나 '휴식 시간에 진

행하여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선수문화와 동떨어진 교육내용으로 인해 공감하기 어려웠다’, ‘교육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교육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81.8%가 폭력,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기관이나 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은 71.8%에 불과하였음
- 그런데,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다수가 응답을 기피하고 있었지만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들이 나타난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 참조해야 할 사항들로 판단됨
- 즉,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스포츠 폭력의 피해가 없는 상태, 그리고 피해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합리적 대책방안이 마련된 상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폭력에 대한 피해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팀 내 활동 등 선수생활의 만족도와 직결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인들 중에는 ‘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이 폭력예방에 도움’, ‘지도자와 관계’, 연령, 운동종목(축구)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곧 (성)폭력 예방교육이 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지도자와의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팀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기의 예방교육과 더불어 팀 내의 인간관계, 즉 지도자와 선수 및 선수들 사이의 화목한 인간관계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스포츠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입법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확대, 「스포츠기본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통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가칭 「서울특별시 스포츠 인권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과 징계권한의 강화, 그리고 인력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 및 위상 확대가 필요함

- 또한 관련 지도자와 선수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합숙훈련의 최소화
와 폭력 예방장치 설치 확대,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억제 대책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체육계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체육계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스포츠계의 위계적 권력구조와 폐쇄성 극복, 엄격한 처벌을 통한 근본적 관행 개선,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궁극적으로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아래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체를 둘러싼 다양한 법,
제도적 장치들이 공고히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근본적으로 지도자 및 관리자의 폭력 예방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스포츠 폭
력이 더욱 더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공론화되어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이를 통해 체육계는 물론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체육계 구성원 모두가 폭력 없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 문헌 〉

■ 단행본

김정호, 「스포츠 윤리학」 레인보우북스, 2015

윤명선, 「인터넷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2010

■ 연구논문

고기복, 스포츠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적 연구 P1-30, 비교법연구, 21(3), 2021

국회입법조사처,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과 향후 과제 P 1-4, 이슈와 논점, 2021

권순신,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운동선수 폭력에 관한 인식 분석, P12-64, 호서대학교, 2020

김동규, 스포츠 폭력의 구조적 맥락과 향후 과제, P6-47, 영남대학교, 2019

김대회 외 8인,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 정비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9

김류경,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폭력 인권 침해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조선대학교, 2019

김보정·김지혁, 스포츠인권의 사각지대: 태권도선수 인권문제와 사회적 책임, P35-44, 한국체육철학회지, 27(2), 2019

김일우, 직장 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개선방안, P217-243, 입법학연구, 19(1), 2022

김잔디·김대회, 체육계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 P3-24, 스포츠와 법, 22(2), 2019

김정하, 스포츠 행정조직의 권력형태와 조직구조, 조직문화 및 조직유효성의 관계, P669-685,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3, 2000

김태명,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P365-400, 서울법학, 25(4), 2018

김현수,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인권: 승리를 향한 폭력의 시대, P1-9, 한국체육학회지, 55(6), 2016

김혜림, 스포츠 폭력 경험 운동선수의 은퇴 후 사회적응 과정에 대한 분석, P7-19, 단국대학교, 2022

남기연·유소미,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법제도적 개선 방안- 스포츠윤리센터
를 중심으로 -, P165-190, 법학논총, 44(4), 2020

류태호외, 학교체육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P32, 2003

문재태·김상겸, 스포츠선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방안 논의,
P77-9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지, 233, 2020

박미랑·박경래, 절도범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연구: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중심으로, P35-60, 6(1), 2012

유광욱·원유병,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폭력종류 및 폭력 원인, P105-116,
한국체육학회지, 46(4), 2007

유재구, 체육계 학교폭력과 대응에 대한 고찰 및 제언, P49-73, 스포츠와 법,
24(2), 2021

육영숙·최재섭, 폭력피해 선수의 스포츠 현장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심리 기술훈
련 단일사례연구, P573-586, 한국스포츠학회지, 19(2), 2021

이강우, 스포츠와 권력에 관한 담론 - 헤게모니적 관점에서-, P15-26, 한국스포츠사
학회지, 12, 1999

이규호 외 3인, 기숙환경 대학운동선수들의 여가제약이 팀 응집력과 폭력 허용도
에 미치는 영향, P557-568, 한국스포츠학회지, 20(1), 2022

이용식,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P93-107,
10(2), 2012

이창훈,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이학준, 스포츠 폭력과 탈 인습적 사고, P11-20,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3(1),
2013

이현우 외, 운동선수 인권향상을 위한 스포츠 지도자의 바람직한 역할 탐색,
P75-99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2), 2021

이흥구, 체육지도 현장의 폭력근절을 위한 질적연구, P155-170, 한국체육정책학회
지, 9(3), 2011

전용재, 중화이론과 불법사행행위, 한국중독범죄학회보, P75-92, 11(4), 2021

전호문, 체육행정 : 스포츠 조직시스템 구조의 적합성과 기능수행능력에 관한 연
구. 한국체육학회, P254-263, 1994

정도희, 체육계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P287-308, 법학연구, 2019

정승재,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P3-39, 2004

정승재, 여성 운동선수의 기본권 침해와 보장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4), 153-173.

정철호, 학생운동선수체벌에 대한 비판적 고찰, P9-34, 스포츠와 법, 15(2), 2012

- 정희준, 여성을 위협하는 체육계의구조적폭력과 그 익숙한 관행, 그리고 대안, 한국여성민우회 문화연대 공동주최 「스포츠 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 토론회 자료집, 2007
- 최병문,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대책, P260-278, 12(4), 2009
- 최옥진·고기태, 축구감독의 권력기반에 대한 선수의 인식, P1247-1258, 한국체육과학회지, 22(4), 2013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년 국제심포지엄: 스포츠 미투, 국제적 현황과 대응, 2019
- 허정훈·고경훈·김은지, 실업팀 직장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 조사, P728-744, 한국체육과학연구원, 31(4), 2020
- 황재욱·최재섭·권상현, 접촉-비접촉 스포츠 유형에 따른 대학 운동선수들의 완벽주의와 불안 및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 검증, P160-177, 체육과학연구, 30(1), 2019
- 황지태·남기연·이윤영,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9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21.
- Cashmore, E, Making sense of sports(5th ed). Routledge, 2005
- Coakley, J, Socialization and sport.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ology, 2007
- Goldstein, J. F, Beliefs about human aggression. In J. H. Groebel & R. A. Hinde (Eds.), Aggression and war: Their biological and social bases(pp. 10-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Joo. J. M, Drug, Assault, Sexual Violence, and Risk Management = Four Selecte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thletic Coaches.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10(2), 267-300, 2007
- Russell, G. W, The social psychology of sport. New York: Springer-Verlag, 1993
- Won. Y. S. & Koo. S. K, A Legal Study for Sexual Harrassment in the Elite Sport-Focusing on a case of Short Track Sexual Harrassment-.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17, 31-40, 2014

■ 보도자료

매일경제, 박은선, 러시아 출국...무슨일이 "혹시?(https://mk.co.kr/news/sports/view/2014/07/10_46315/), 2014.07.30.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n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79892>), 2020. 11. 13.

스포츠인권센터스포츠윤리런, (<https://edu.k-sec.or.kr/home/kor/education/application/index.do?menuPos=2&searchValue7=C>), 2022. 06. 05.

한겨레 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4986.html>), 2021. 07. 25.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ndxno=216760>), 2021. 10. 18.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20000854>), 2021. 10. 20,

■ 기타 참고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2020.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2010.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2019.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 2019.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2019.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2019.

대한체육회, 2018년 스포츠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안내 보고서, 2019.

대한체육회, 스포츠 폭력·성폭력 신고상담. 스포츠 폭력·성폭력이란, 스포츠 인권센터, 2019.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처리 매뉴얼, 클린스포츠센터, 2019.

대한체육회, 해외 선진국의 대책,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업무계획, 202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021.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 인권 침해 예방·대응 매뉴얼, 2021.

<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스포츠 폭력에 대한 피해실태와 서울시 차원의 합리적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구의 일부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폭력에 대한 피해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사에서의 응답자 및 응답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 결과도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도 학문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연구책임자 : 중원대학교 교수 이상열

(☎ 043. 830-8828, lsypen@hanmail.net)

1. 다음 문항은 귀하의 팀에 대한 일반적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험 및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모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1) 귀하는 현재 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 귀하의 팀의 주된 합숙 훈련 장소는 어디인가요?	① 학교 내 숙소 ② 외부 전용 숙소 ③ 숙박업소 ④ 기타()

2. 다음 문항은 (성)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최근 1년 이내 귀하가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문 항	경험	문항	경험
1) 팀에서 맞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2)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3) 팀에서 욕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4) 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5) 팀 내에서 별로 경기 출전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6) 팀 내에서 일정 시간 격리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7) 팀 내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에 제외 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8) 팀 내에서 폭력피해를 보고했으나 묵인 당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9) 내 몸 부위(가슴, 엉덩이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 모에 대해 성적으로 기분 나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10) 야한 농담이나 성 경험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11) 내가 싫다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 편지(이메일), 선물 등을 계속해서 보내어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12) 기분 나쁜 정도의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13) 내 뜻을 무시하고 성적 키스, 성기 접촉, 포옹 등을 하는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14)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15) 두려움, 위협, 폭력 등으로 인해 강제 적인 성행위를 당했다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3. 다음 문항은 최근 1년 동안의 구체적 체벌 경험 등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모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폭력”이란 손, 발, 몽둥이,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의미함)

문 항	
1) 최근 1년 동안 팀 내에서 훈련, 합숙, 시합 등을 하면서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 최근 1년 동안 팀 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주로 누가 신체폭력을 가했나요?	① 지도자 ② 선배 ③ 동료 ④ 후배 ⑤ 기타()
3) 최근 1년 동안 팀 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주로 얼마나 체벌을 받았나요?(때렸나요)?	약() 회
4) 최근 1년 동안 체벌은 주로 언제 이루어졌나요?(해당 사항에 모두 (√)표 하여 주십시오)	① 훈련 전 ② 훈련 중 ③ 훈련 후 ④ 시합 직전 ⑤ 시합 중 휴식시간 ⑥ 시합 직후 ⑦ 휴식 중 ⑧ 외출 중 ⑨ 기타()
5) 최근 1년 동안 체벌을 당한 장소는 주로 어디였나요? (해당 사항에 모두 (√)표 하여 주십시오)	① 숙소 ② 훈련장 ③ 경기장/시합장 ④ 코치실 ⑤ 팀실 ⑥ 락커룸(샤워장) ⑦ 가해자의 집 ⑧ 외부 ⑨ 기타()
6) 최근 1년 동안 신체폭력을 당한 후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① 인격적인 모욕감 등으로 당장 운동을 그만 두고 싶었다. ② 당장 운동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지만 운동이 싫어 졌다. ③ 특별한 느낌이 없었다. ④ 더욱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⑤ 기타 ()
7) 최근 1년 동안 체벌을 당했을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 ②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③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④ 싫다고 분명히 말하며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⑤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 ⑥ 지도자나 관련단체에 신고를 했다. ⑦ 기타 ()
8) 최근 1년 동안 체벌을 당한 후 누구에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① 없다 ② 가족 ③ 팀 동료 ④ 친구 ⑤ 지도자 (감독, 코치) ⑥ 상담원 ⑦ 신고기관 ⑧ 기타()
9) 팀 생활 중 신체폭력을 당한 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사항에 모두 (√)표 하여 주십시오)	①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②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③ 불만을 얘기하면 선수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 ⑤ 도움을 요청할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⑥ 내가 잘못해 신체폭력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⑦ 기타()
10) 최근 1년 동안 팀 내에서 훈련, 합숙, 시합 등의 운동 현장에서 동료(선배, 후배 포함)가 체벌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자신이 피해를 주거나 받았던 일을 제외하고 답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니오 ② 예 (약 회)
11) 최근 1년 동안 팀 내에서 동료가 체벌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하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말렸음 ② 동료의 가족에게 알림 ③ 지도자에게 알림 ④ 경찰에 신고 ⑤ 폭력상담센터에 상담 ⑥ 모른척함 ⑦ 기타()
12) 최근 1년 동안 팀 내에서 동료가 체벌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② 피해를 당할까봐 ③ 관심이 없어서 ④ 맞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⑤ 기타()
13) 귀하는 팀 지도자(감독, 코치 등)가 왜 화를 낸다고 생각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신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② 규율 및 지시에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③ 시합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④ 팀워크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⑤ 아무런 이유 없이 ⑥ 상습(습관)적으로 ⑦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⑧ 불안한 계약관계 때문에 ⑨ 출신이나 소속팀이 다르기 때 때문에 ⑩ 기타()

4. 다음 문항은 폭력/성폭력 해결방안에 대한 귀하의 경험과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1) 선수 생활 기간 동안 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나 요? 받아 본 적이 있으면 교육을 몇 번 받았나요?	① 없다 ② 있다 (약 회)
2) 폭력 예방법/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① 알고 있다 ② 전혀 모른다
3) 만약,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았나요? (모두 고르시오)	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교육을 통해 ② 학교 또는 소속팀 에서 전문 강사(혹은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 ③ 학교에서 동영상 감상을 통해 ④ 팀 지도자의 교육을 통해 ⑤ 부모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 ⑥ 혼자 책을 통해 ⑦ 매스컴(TV, 신문 등)을 통해 ⑧ 기타 ()
5) 폭력 예방 교육/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신체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② 도움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 된다 ⑤ 매우 도움된다
6) 폭력 예방 교육/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나요? (모두 고르시오.)	① 선수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 ② 선수들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③ 폭력·성폭력의 대처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④ 지도자(감독, 코치)의 인식 및 태도가 달라졌다. ⑤ 도움 되지 않았다. ⑥ 기타 ()
7) 폭력 예방 교육/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어떤 점이 부족했나요? (모두 고르시오.)	① 휴식시간에 진행하여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② 선수문화와 동떨어진 교육내용으로 인해 공감하기 어려웠다. ③ 교육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 ④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부족하지 않았다. ⑥ 기타 ()
8) 폭력과 관련된 신고/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9)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0) 신고/상담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②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③ 불만을 얘기하면 선수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④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 ⑤ 도움을 요청할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⑥ 내가 잘못해 신체폭력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⑦ 기타()
--	---

5. 다음 문항은 지도자(감독, 코치 포함)와 선수 관계에 대한 귀하의 경험과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 또는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팀의 지도자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까지 내 운동 경력에 지도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지도자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지도자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지도자가 나의 실력 향상을 위해 쏟은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실수를 하면 팀원들은 나를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팀원들과 나는 서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팀원들과 나는 운동(경기)을 할 때 서로 보호하고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9) 팀원들과 나는 재밌는 일들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팀원들과 나는 서로 다투었을 때 쉽게 화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 문항은 개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답 변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귀하의 나이는?	()세
귀하의 운동종목은?	()
운동을 몇 년 동안 하였나요?	()년

감 사 합 니 다.

(판권지)

서울시 스포츠 폭력행위의 원인분석과 근절방안 모색

제 안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와 안전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입법담당관)

담 당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수희 지원관

연구기관 :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 : 이 상 열

연 락 처 : 043-830-8828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238-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음)